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회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2년 12월 2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10월 11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80,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400,000,000,000원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2013년 1월 23일 ~ 2013년 1월 25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3조에 의한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한 자)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4.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투자회사의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모주식 및 본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투자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유가, 가스가격, 환율, 생산량 및 개발비 등)가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으로 부보(보험기간은 10년임)될 부분을 제외한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조건에 의해 부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동 위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가. 일반 위험. 원본손실위험 및 나. 특수 위험. 보험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 중 일부는 만기시점까지 Parallel 유전의 지분 매각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동 매각가치 변동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8. 유가 및 환율에 대한 헤지(Hedge) 거래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므로 파생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유가, 환율, 생산량, 예상 USD 유입액 등)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본 투자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주주에게 이익초과분배금의 형태로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유의 생산량이 예측과 다르거나 개발비 지출 계획 및 배당계획 등이 바뀔 경우 본 투자회사의 현금흐름은 예측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에 대한 예상 분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Parallel 유전" 매매 거래를 위해 삼성물산 측 관계사와 본 투자회사는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본 거래의 완료를 위해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와 지분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회사는 인수대금 지급 전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회사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의 운용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반 보수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3-1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와 [별첨 3-2 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하여 본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가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업무(모집업무)만 수행할 뿐 본 판매회사가 동 투자회사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14.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및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계획", "계획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 등과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 및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회계법인 또는 주관회사의 합리적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6.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 투자회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2.12.21]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펀드코드 : AE241]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자본금의 **50%이상**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예상 매장량과 실제 매장량의 차이로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과 예상 생산량 및 시점과 실제 생산량 및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이 있는 **매장량·생산량예측위험,** 유가 하락에 따른 현금유입금액 감소에 따른 **원유가격변동위험**, 천재지변 및 유전 소재 지역의 정세 급변으로 인한 사업 불능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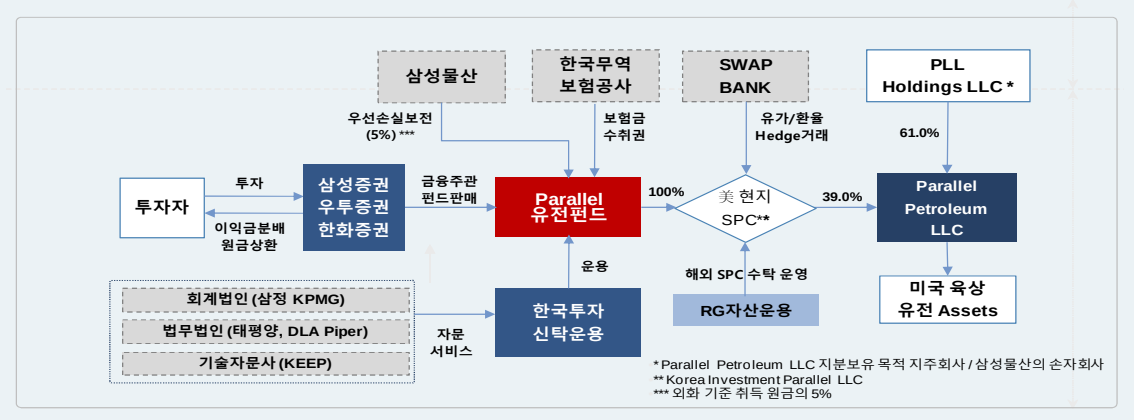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본 투자회사는 정관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지분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전담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 특수목적법인인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이하 "KIP")는 현재 삼성물산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SAMSUNG C&T OIL&GAS PARALLEL CORP(이하 "SONG Parallel") 과 석유공사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ANKOR E&P가 각각 90%, 10%씩 보유중인 PLL Holdings LLC의 자회사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PLL Holdings LLC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으로 Parallel 유전에 투자하며, 이 지분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본 지분매매계약서 체결 이전에 삼성물산의 미국내 자회사인 SONG Parallel과 본 투자회사간에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본 투자회사의 투자 집행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① 현재: 삼성물산의 미국내 100% 자회사인 SONG Parallel과 석유공사의 미국내 100% 자회사인 ANKOR E&P Holdings가 Parallel Petroleum LLC를 각각 90%, 10%의 비율로 보유

② 삼성물산과 석유공사는 각각 90%, 10% 비율로 기존 보유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PLL Holdings LLC를 설립하고, PLL Holdings LLC가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100% 보유

③ 본 투자회사는 도관(Conduit)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형태의 특수목적회사인

KIP를 설립
④ KIP는 PLL Holdings LLC로부터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매입하여 주식을 취득. 동 지분 39% 매입 가격은 2011년 11월 삼성물산측과 Apollo Global Management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매입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며, 동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본 투자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정KPMG를 통해 설립부터 운용, 매각까지 총 10년(본 투자회사의 운용기간)동안의 추정 현금흐름을 검토
검토결과 매장량 중 추정가채매장량(Probable)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변동 하의 내부수익률(IRR) 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긍정적인 Case	기본 Case	보수적인 Case
매장량 기술적 실현 가능성	100%	90%	50%
내부수익률(IRR)	11.8%	11.4%	10.0%

⑤ 거래종결 후: PLL Holdings LLC와 KIP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각각 61%, 39%씩 보유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 지역적 특성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한 유전은 대부분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텍사스 주의 퍼미안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퍼미안 분지는 미국 내 최대 원유 산지 중 하나입니다. 가로 약 400km, 세로 약 480km에 달하는 면적으로 미국 West Texas에 위치한 퇴적 분지로 퍼미안 지질기에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퇴적암층에서 이름이 유래합니다. 크기 순으로 Midland Basin, Delaware Basin, Marfa Basin 등의 순서로 세분됩니다. 1920년대부터 첫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1940~50년대에 들어 필드(Field)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생산이 다소 감소하다가 1970년대 들어 회수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다시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산화탄소를 유전내에 주입하여 석유의 회수율을 높이는 증진회수기법(CO2-Enhance Oil Recovery)을 가장 먼저 시도한 유전지대입니다.
2002년 미국 에너지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퍼미안 분지의 유전은 West Texas 에 존재하는 Oil reservoir(저류층)가 각각 145개, 62개에 달하며, OOIP(Original Oil In Place, 원시매장량)가 954억배럴, 누적생산량 및 Proved(확인)매장량이 합계 337억배럴로 추산하였으며, 따라서 ROIP(Remaining Oil In Place, 잔존매장량)는 617억배럴이며 2002년 증진회수기법(CO2-Enhance Oil Recovery)기술로 393억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퍼미안 지대에는 미국 내 대부분의 주요 E&P(Exploration & Production)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로는 Occidental Petroleum Corp, Kinder Morgan Energy Partners LP, Linn Energy LLC, Apache Corp, BP, Concho Resources 등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적 안정성 및 우수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운송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미국 텍사스 및 뉴멕시코 주는 원유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의 성숙한 정치상황 하에 형성된 안정적인 법제도를 바탕으로 투자 장려정책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낮으며 둘째, 선진화된 생산개발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퍼미안 분지 지역은 미국내 가장 큰 유전지대 중의 하나로서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정제, 운송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원유 및 가스는 트럭과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유공장으로 운송되어 제품화된 뒤 미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Parallel Petroleum LLC 소유 광구 개요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유전은 세계최대 유전지역 중 한곳인 미국 텍사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물산과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100% 자회사인 SONG Parallel과 Ankor E&P Holdings를 통해서 2011년 11월 미국의 Apollo Global Management로부터 각 90% 및 10%의 지분 비율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산 유전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Parallel Petroleum LLC는 7개의 생산 유전 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 결산일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 중 유전의 생산량 예측치를 반영한 예정 원금상환스케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형태로 분배되며, 동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분배금(배당)의 형태로 분배될 계획입니다. - 만일 어느 결산기에 발생한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원금상환스케줄에 따른 예상금액을 하회하면, 해당 결산기에는 분배 가능한 금액만이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으로 지급되고, 부족한 투자원금은 다음 결산기로 이월되어 분배되며, 해당 결산기의 이익분배금(배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류	투자회사, 부동산형, 폐쇄형(중도환매불가능), 단위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회사	없음	0.2100	0.0100	1.6200	727	775	812	887	99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투자회사	2013.01.29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2013.01.29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회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회사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회사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회사 (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재형	1989	차장	11	4,530	-	-	2	-6.24	9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table>
<tr><td></td><td>
<table>
<tr><th rowspan="3">성명</th><th rowspan="3">생년
(년)</th><th rowspan="3">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특별자산형)</th><th rowspan="3">운용경력
년수</th></tr>
<tr><th rowspan="2">집합투자기구수</th><th rowspan="2">운용규모</th><th colspan="2">운용역</th><th colspan="2">운용사</th></tr>
<tr><th>최근1년</th><th>최근2년</th><th>최근1년</th><th>최근2년</th></tr>
<tr><td>박용수</td><td>1964</td><td>대표
이사
회장</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주1)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사항 중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등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td></tr>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
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 위험</td><td>본 투자회사는 Parallel 유전의 매장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삼성물산이 제공한 Parallel 유전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한 매장량 평가 자료 및 생산 계획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경우 예측 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예측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현금유입액 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유입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동 그래프에 사용한 데이터는 예시용이므로 향후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공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자료는 세계적인 매장량 평가기관인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이하 “CG&A”)의 자료로서, 본 투자회사는 국내에서 유전관련 기술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이앤피㈜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해당 CG&A의 예측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매장량 및 생산량과 실제 매장량 및 생산량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분배금(배당) 및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석유회수는 크게 1차 회수 (Primary Production), 2차 회수(Secondary Production), 3차 회수 혹은 증진 회수 (Tertiary Production 또는 EOR: Enhanced Oil Recovery) 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미국 에너지청의 2002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미국내 유전의 경우 약 37%가 1차 회수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51%가 2차 회수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12%가 3차 회수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Parallel 유전의 경우 1차 회수 및 2차 회수 단계 방법을 통해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에 따른 매장량 감소에 따라 1차 회수가 어려워지면 2차 회수를 통한 생산이 증가할 수 있고, 3차 회수를 통한 생산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현금 유입액 추정시 이와 같은 2차 회수까지의 회수 방법 전환과 이에 따른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와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 추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그러나, 회수 방법 전환 및 이에 따른 CAPEX 및 OPEX의 실제 금액이 예상과 달라짐에 따라 실제 현금 유입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익분배금(배당) 및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감소 위험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P는 삼성물산이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보유를 위해 설립한 PLL Holdings LLC로부터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양수받게 됩니다. KIP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와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받게 되며, 예상되는 CAPEX 및 OPEX 투자액을 감안하여 현금유입액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본 투자회사의 투자기간 중 예상 생산량 및 유가와 실제 생산량 및 유가 변동에 따른 현금유입액 변동과 더불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CAPEX 및 OPEX 지출액이 예상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예상된 현금유입액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헤지(Hedge) 계약체결 위험	신고서 작성일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삼성물산과 “Parallel 유전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 를 체결한 상태이며, 본 협약서에 따라 최종 지분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동 과정에서 시장 상황(유가의 급변 등) 등의 이유로 헤지(Hedge) 유가 및 목표 헤지 물량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체결)되지 못할 경우 최종 지분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한 행사가격에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예시 수익율에서 실제 수익율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헤지(Hedge) 계약정산 위험	본 투자회사는 투자대상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원유의 시장가격 변동(가격하락) 위험 및 환율하락(원화절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Hedge Bank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KIP를 통해 체결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 계약을 위한 여신 한도의 확보 및 헤지(Hedge) 거래의 결제/정산 등을 담보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의 청구권 및 본 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Hedge Bank에 대해 포괄적으로 선순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헤지(Hedge)거래의 결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한 후 투자원금 및 이익분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제 원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수익 중 일정부분이 회사내 유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 현금흐름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 유보를 못하거나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헤지(Hedge)거래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헤지(Hedge)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어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헤지(Hedge)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매각 또는 본 투자회사가 가입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으로 손실의 일정부분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거래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 금액이 부족한 경우 자산 매각대금 또는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헤지(Hedge)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금액으로 일차적으로 사용되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지(Hedge) 거래가 종결된 사유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부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서 헤지(Hedge)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 Hedge 계약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정산시 거래 상대방인 Hedge Bank의 거래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도 높은 금융기관과 장외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헤지(Hedge) 손실 위험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해 헤지(Hedge) 정산금 미결제 상황이 발생하여 헤지(Hedge) 계약 당시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수령받지 못할

		경우 본 투자회사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헤지(Hedge)계약시 예상한 규모(Notional Quantity)와 실제 규모(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USD 유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상한 헤지(Hedge)효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시 파생상품 거래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지 (Hedge)계약체결 위험	신고서 작성일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삼성물산과 “Parallel 유전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 를 체결한 상태이며, 본 협약서에 따라 최종 지분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동 과정에서 시장 상황(유가의 급변 등) 등의 이유로 헤지(Hedge) 유가 및 목표 헤지 물량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체결)되지 못할 경우 최종 지분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한 행사가격에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예시 수익율에서 실제 수익율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각가치 / 매각시기 변동 위험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는 Parallel Petroleum LLC가 지급하는 원유·가스 등의 판매수입을 기반으로 한 분배금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또는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 매각 금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 투자회사는 매각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SONG Parallel과 본 투자회사가 체결한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에 따르면,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의 매각을 통한 Exit시에도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 39%를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삼성물산측이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매각가치 산출시에는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을 매각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따라서 Parallel Petroleum LLC에서 발생하는 G&A Cost(일반관리비)는 매각가치 산출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본 투자회사로 유입이 예상되는 총 현금 중 배당 수익과 매각가치의 비율은 각각 72.3% 및 27.7% 입니다.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는 만기 시점의 매각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되며, 한편 지분 또는 광업권 매각시점 상황에 따라 본 투자회사 만기와 지분 매각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전의 매각이 활발한 지역이며 미국내 유전을 포함한 광업권 매매 현황 및 삼성물산과의 합의 내용 고려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혹은 보유 광업권의 매각 불가능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본 투자회사는 매각가치 변동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정 이후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각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정된 본 투자회사 만기 시점까지 지분 매각이 완료되지 않는 위험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Parallel 유전 지분 매각시 본 투자회사 보유 지분매각을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Tag-along 규정을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에 삽입하여 지분 매각에 따른 위험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구분 / 내용 미국내 광업권 매매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유전을 포함한 광업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내 2005-2011.11월 유전 거래내역 건수 : 총 1,435건 (연평균 205건) (출처 : IHS Herold)

삼성물산과의 합의 사항	- 본 투자회사는 삼성물산의 지분매각에 대하여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보유 - 삼성물산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잠재 Buyer와의 매매가 기준으로 삼성물산에 매각	

참고로, 매각가격 변동으로 인한 회수 현금 및 수익률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백만원)	기본안-10%	기본안	기본안+10
분배금 총액 (매각가치)	763,615 (190,332)	784,763 (211,480)	805,911 (232,628)
투자 수익률(IRR)	약 11% - 0.3%	약 11%	약 11% + 0.3%

주1) Parallel Petroleum LLC 의 분배가능 금액에 39%의 KIP/본 투자회사 지분율 및 정산과정 소요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여 가정한 수치입니다.

경영진 위험

본 투자회사는 Parallel 유전의 비운영권자로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 보유를 통해 Minority 주주로 참여함에 따른 경영진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Parallel Petroleum LLC는 자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최대주주로서 운영할 예정이고, Parallel Petroleum LLC에 대한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체결 및 삼성물산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비운영권자 위험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재무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한 금액은 미국 텍사스주 소재 육상 유전인 Parallel 유전에 대한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설립한 PLL Holdings LLC로부터 美 Delaware州 소재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인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를 통해 취득하는데 사용합니다. 본 투자회사는 설정기간 동안 Parallel Petroleum LLC로부터 매 분기마다 Parallel 유전에서 산출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세후 판매수익을 지급받아 비용 등 지급 후 잔여액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운용종료시점에 KIP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Exit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 관련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매입 가격은 2011년 11월 삼성물산측과 Apollo Global Management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매입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동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본 투자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정KPMG를 통해 설립부터 운용, 매각까지 총 10년(본 투자회사의 운용기간)동안의 추정 현금흐름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의사결정시[별첨4- 현금흐름 및 수익률 산출 내역]의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변동 위험

본 투자회사는 미국 텍사스 지역에 위치한 Parallel 유전에 투자하며 대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매출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통해 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유전 소재지의 특성상 본 투자회사는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 또한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산 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은 원/달러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 가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예상 현금흐름 및 전체 투자금의 50 ~ 90%수준으로 달러 선도 계약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상 자산에서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되고,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 또한 매 3개월 단위로 유입될 예정이므로, 동 스케줄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특정 결제 기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 거래를 통해 환율

<table>
<tr><td></td><td></td><td colspan="3">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실제 유입 현금액과 헤지(Hedge) 계약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헤지(Hedge)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 colspan="2">•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1주=5,000원)</td><td>환매 방법</td><td>• 이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원칙적으로 환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정관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한함</td></tr>
<tr><td>기준가격</td><td colspan="4"><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4"><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대표번호 : 02-6112-5999 / 인터넷 홈페이지 : kira.koreainvestment.com)</td></tr>
<tr><td>모집기간</td><td colspan="2">2013년 1월 23일 ~ 2013년 1월 25일</td><td>모집·매출 총액</td><td>400,000,000,000원</td></tr>
<tr><td>효력 발생일</td><td colspan="2">2025년 10월 11일</td><td>존속기간</td><td><u>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u>
<u>다만, 자산 전체가 전부 현금화 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u></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8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ra.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ra.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AE24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주 1) 본 투자회사는 자산을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에 위치한 육상 유전들의 광업권의 지분(이하 동 광업권에 대한 Parallel Petroleum 보유 지분 또는 동 육상 유전을 통칭하여 “Parallel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 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지분 39%를 삼성물산의 손자회사인 PLL Holdings LLC 로부터 양수할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Korea Investment Parallel LLC, 이하 ”KIP”)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입니다.

(주 2)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14 조의 2 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며, 최초투자금액의 전액상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 3) 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본 투자회사는 단위형으로 설립된 이후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 등록 후 최초 증자일로부터 1 개월간
2. 정관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4.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모집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모집의 방법	주식의 수	주당모집가액	모집총액
		모집	확정	확정
기명식 보통주	일반공모	80,000,000주	5,000원	4,000억원

(주 1) 본 투자회사의 경우 본 공모에 따른 1 주당 모집가액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3년 1월 23일 ~ 2013년 1월 25일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배정방법 및 절차	- 총 청약주식수가 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매회사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 6입을 원칙으로 투자자에게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배정대상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청약미달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달분은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가 전량 인수합니다. -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에 관한 통지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www.wooriwm.com) 및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에 게시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배정방법 및 절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1 부. 4. 나. (5)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식의 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 반 모 집	80,000,000주 (100%)	5,000원	400,000,000,000원	-
기 타	-	-	-	-
합 계	80,000,000주 (100%)	5,000원	400,000,000,000원	-

(2) 일반모집 대상 배정 내역

모 집 대 상	주식의 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60,000,000주 (75%)	5,000원	300,000,000,000원	-
기관투자자	20,000,000주 (25%)	5,000원	100,000,000,000원	-
합 계	80,000,000주 (100%)	5,000원	400,000,000,000원	-

(주 1) "기관투자자"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단,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제 3 항의 전문투자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③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④ 위 ①~③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주 2) 배정주식수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②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판매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전량 인수합니다.

(3) 모집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주식의 수			8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확정가액	5,000원
모집총액		확정가액	400,000,000,000원
최저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200주/기관투자자 20,000주
최고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80,000,000주/ 기관투자자 80,000,000주
청약단위			200주 이상 2,000주 이하: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20,000주 이하: 2,000주 단위 2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2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200,000주 초과: 20,000주 단위
청약기간	일반모집	개시일	2013년 1월 23일
		종료일	2013년 1월 25일
	기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청약금액의 100%
	기타		-
납입기일			2013년 1월 2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주1), 주2)			매년 3월 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 - 투자회사 설립연도: 2012년 6월 13일 - 투자회사 청산연도: 당해 회사 청산일

(주 1) 각 사업연도별 배당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결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본 투자회사의 예상 배당과 관련 내용은 “제 2 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본 건 청약시 청약증거금율을 100%로 하였으며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금액만큼 환불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절차

(1) 모집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
청약 공고	2013년 1월 23일	매일경제신문
	2013년 1월 23일	한국경제신문
배정 공고	2013년 1월 29일	인터넷공고 (주1)

(주 1)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에 관한 통지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www.wooriwm.com) 및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www.koreastock.co.kr)에 게시합니다.

(2) 청약방법

판매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하며,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청약기간은 2013년 1월 23일 ~ 25일(3영업일)까지입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3년 1월 29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다만,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주 이상 80,000,000주 이하, 기관투자자의 경우 20,000주 이상 80,000,000주 이하로 합니다. 청약한도의 상한을 초과한 청약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청약한도의 하한에 미달한 청약은 그 전체에 대하여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각 판매회사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합니다.

⑦ 각 청약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본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1. 교부장소 :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2. 교부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수령 또는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비고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작성 (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
온라인(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

3.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 ~ 청약일

4. 기타사항 :

1) "본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 및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단, 전자문서(홈페이지 및 HTS 사용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투자설명서 관련 안내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라 금번 일반공모에 참여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및 청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취급처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청약결과 배정방법

판매회사는 본 주식의 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본 주식을 배정합니다

① 총 공모주식수 80,000,000주(400,000,000,000원)에 대해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에 각각 75% 와 25%를 배정합니다.

②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은 인수물량 내에서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구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각 판매회사 배정주식수 계
삼성증권	10,000,000주	28,000,000주	38,000,000주
우리투자증권	10,000,000주	28,000,000주	38,000,000주
한화투자증권	-	4,000,000주	4,000,000주
합계	20,000,000주	60,000,000주	80,000,000주

청약결과, 각 판매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부분 또는 기관투자자 배정부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만 청약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는 초과청약이 있는 부분에 배정된 주식을 청약미달이 발생한 부분에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투자자 청약분은 청약처에 관계없이 총 청약주식수의 50%를 판매회사 중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 및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청약받은 것으로 보고, 잔여주식수를 청약미달분으로 봅니다.

③ 어느 판매회사의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받아 인수하여야 할 주식수 미만이고 다른 판매회사의 총 청약주식수는 배정받아 인수하여야 할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미달 판매회사의 청약미달분을 청약초과 판매회사에게 초과 청약주식수의 한도 내에서 추가 배정합니다. 만약 청약초과 판매회사가 복수인 경우, 위 추가 배정은 청약초과 판매회사의 본 주식 인수물량에 비례하여 실시합니다.

④ 총 청약주식수가 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매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배정하되, 일반청약자의 배정 부분에서 발생한 초과청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각 판매회사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5사6입 등의 방법으로 안분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를 최소화하여 안분배정하기로 합니다.

⑤ 상기 절차에 따라 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청약미달이 발생한 해당 판매회사가 자기 계산에 따른 인수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상기 내용 이외의 것은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판매회사는 본 주식의 주금을 본 투자회사에 납입합니다.

② 주권교부일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시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판매회사가 공고합니다.
2. 장소 : 각 해당 청약취급처
3. 1호와 2호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청약자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인수방법
명칭	고유번호	주소			
삼성증권	00104856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기명식 보통주식 80,000,000주 (100%)	주1)	총액인수
우리투자증권	0012018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한화투자증권	001486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주 1)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 우리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가 전체공모물량의 100%를 인수하며, 각 판매회사는 인수계약서에 따른 총액인수수수료(납입금액의 3.5%)를 본 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주 2) 인수회사 간 수수료 배분은 별도 합의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최초증자일로부터 90일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 주주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될 경우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 가격은 장 개시시점까지 동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90~200% 범위 내에서 동시호가를 받아 결정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AE24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12년 6월 13일	투자회사 최초설립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본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정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해산일까지
2. 회사 설립일로부터 2025년 3월 31일이 경과 하기 이전에 회사재산 중 정관 제47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전체가 전부 현금화 된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자산 전부가 현금화되는 날 이후 이사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회사명	RG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6층 (대표전화 : 02-6670-1800, www.rgasset.co.kr)
위탁 업무	1. 해외 SPC 인 KIP(본 투자회사가 100% 지분소유한 미국 소재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관리업무 2. Parallel Petroleum LLC 및 Parallel Petroleum LLC 소유 자산의 관리업무

(주1)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원래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주2) 본 수탁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5.9.28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재형	1989	차장	11	4,530	-	-	2	-6.24	9개월

<이력>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사
- 2015. 01. ~ 2019. 01: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팀/사업팀
- 2019. 01. ~ 2022. 04: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사업팀
- 2022. 05. ~ 2024. 12: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자산운용부
- 2025. 01. ~ 현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프로젝트금융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	-	-	-	-	-	-	-	-	-

<이력>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회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재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19.12.31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용수	1964	대표이사 회장	-	-	-	-	-	-	-
<이력> -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미국 텍사스A&M University 산업공학 석사, 아주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2008. 07 ~ 현재 : RG자산운용 대표이사 회장									

(주1)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사항 중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등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지훈	2013년 1월 29일 ~ 2014년 12월 4일
이제호	2014년 12월 5일 ~ 2016년 12월 29일
김왕곤	2016년 12월 30일 ~ 2018년 10월 30일
장도익	2018년 10월 31일 ~ 2025년 10월 10일
박재형	2025년 10월 11일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특별자산, 폐쇄형, 단위형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해자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재산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는 해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전담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 특수목적법인인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이하 “KIP”)는 현재 삼성물산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SAMSUNG C&T OIL&GAS PARALLEL CORP(이하 “SONG Parallel”) 과 석유공사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ANKOR E&P가 각각 90%, 10%씩 보유중인 PLL Holdings LLC의 자회사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PLL Holdings LLC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으로 Parallel 유전에 투자하며, 이 지분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분배받게 됩니다.
- 이를 위해 현재는 본 지분매매계약서 체결 이전에 삼성물산의 미국내 자회사인 SONG Parallel

과 본 투자회사간에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가 체결된 상태입니다(구체적인 투자집행절차는 “제2부 9.가.(1)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본 투자회사는 정관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지분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원유매장량과 생산량, 국제원유가격, 천연가스가격, 개발비 및 환율변동 등 다양한 변수와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투자회사의 주주는 직접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주주에게 이익초과분배금의 형태로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유의 생산량이 예측과 다르거나 개발비 지출 계획 및 배당계획 등이 바뀔 경우 본 투자회사의 현금흐름은 예측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에 대한 예상 분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 등 본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	자본금의 50%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방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다.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라.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마.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바.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

		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사.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채권	**자산총액의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설정일로부터 6월간 2. 회사 결산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결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1월간(사업년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5. 회사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정관 제4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관 제48조 제3호 및 제4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회사의 일부해산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정관 제49조 제2호 본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회사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외 파생상품	에너지관련	에너지나 에너지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채권관련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회사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주1) 본 투자회사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델타중립거래를 제외함)이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본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본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별도로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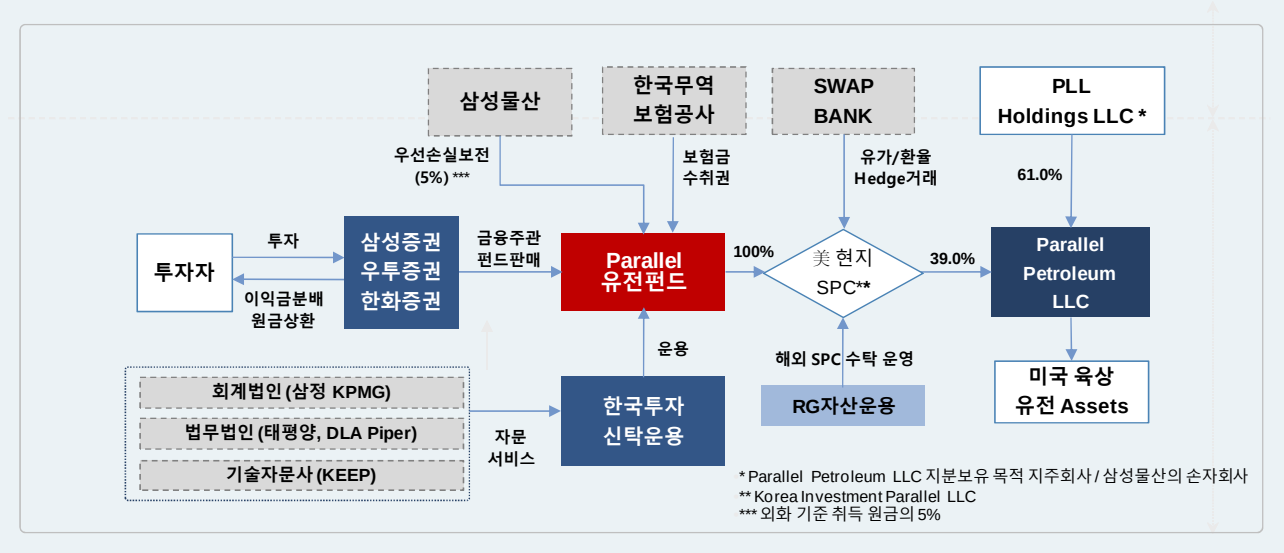
아래 표에 제시된 용어들은 이하 본문에 사용된 원유 및 가스 관련 각종 단위에 대한 설명이오니 투자자께서는 검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구분	정의
b/d	barrels per day	하루에 생산/소비되는 원유량의 표시
bbl	barrel	배럴. 42 갤런에 해당하는 석유 계량 단위 (1갤런 = 3.785412 리터) (미국 기준)
boe	barrels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 배럴. 일반적으로 6,000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는 열량기준 1배럴(42갤런)의 원유와 같은 에너지를 냄.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통일 규격으로 표기하기 위한 단위임. 원유1배럴과 천연가스 6,000입방피트를 1boe로 표기한다.)
Mboe	Thousand barrels of equivalent	석유환산 천배럴
MMboe	Million barrels of equivalent	석유환산 백만배럴
boed	barrels of equivalent per day	일일 boe
BTU	British thermal unit	영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트, 파운드법에 의한 열량단위. 1파운드의 물을 1°F만큼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량임. 1BTU = 1.055kJ = 0.252kcal
E&P	Exploration and Production	탐사 및 개발 부문.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상류부문(Upstream) 분야에 해당함.
Mcf	thousand cubic feet	1,000 입방피트 1 Mcf는 미국의 일반가정에서 조리/온수 등으로 4일동안 사용하는 가스량
Mcfe	energy equivalent of 1,000 cubic feet of natural gas	1Mcf의 천연가스에서 얻는 에너지. 일반적으로 원유1배럴은 열량기준 메탄가스 6Mcf와 같은 에너지를 낸다.
MMcf	million cubic feet	100만 입방피트
Tcf	Trillion cubic feet	1조 입방피트
상류부문 (Upstream)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유전을 탐사, 개발하고 생산하는 활동
중류부문 (Midstream)		송유관(Pipeline), 저장소(Storage), 포집관 및 처리시설(Gathering & Processing Assets)
하류부문 (Downstream)		석유의 정제 및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전담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 특수목적법인인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이하 "KIP")는 현재 삼성물산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SAMSUNG C&T OIL&GAS PARALLEL CORP(이하 "SONG Parallel") 과 석유공사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ANKOR E&P가 각각 90%, 10%씩 보유중인 PLL Holdings LLC의 자회사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PLL Holdings LLC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으로 Parallel 유전에 투자하며, 이 지분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본 지분매매계약서 체결 이전에 삼성물산의 미국내 자회사인 SONG Parallel과 본 투자회사간에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본 투자회사의 투자 집행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① 현재: 삼성물산의 미국내 100% 자회사인 SONG Parallel과 석유공사의 미국내 100% 자회사인 ANKOR E&P Holdings가 Parallel Petroleum LLC를 각각 90%, 10%의 비율로 보유

② 삼성물산과 석유공사는 각각 90%, 10% 비율로 기존 보유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PLL Holdings LLC를 설립하고, PLL Holdings LLC가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100% 보유

③ 본 투자회사는 도관(Conduit)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형태의 특수목적회사인 KIP를 설립

④ KIP는 PLL Holdings LLC로부터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매입하여 주식을 취득. 동 지분 39% 매입 가격은 2011년 11월 삼성물산측과 Apollo Global Management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매입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며, 동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본 투자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정KPMG를 통해 설립부터 운용, 매각까지 총 10년(본 투자회사의 운용기간)동안의 추정 현금흐름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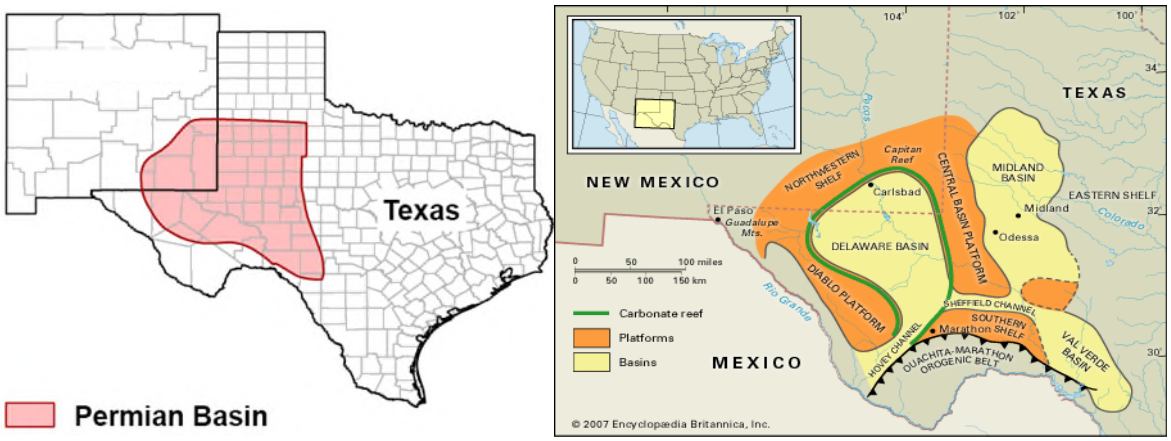
검토결과 매장량 중 추정가채매장량(Probable)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변동 하의 내부수익률(IRR) 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긍정적인 Case	기본 Case	보수적인 Case
매장량 기술적 실현 가능성	100%	90%	50%
내부수익률(IRR)	11.8%	11.4%	10.0%

⑤ 거래종결 후: PLL Holdings LLC와 KIP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각각 61%, 39%씩 보유

1)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 지역적 특성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한 유전은 대부분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텍사스 주의 퍼미안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퍼미안 분지는 미국 내 최대 원유 산지 중 하나입니다. 가로 약 400km, 세로 약 480km에 달하는 면적으로 미국 West Texas에 위치한 퇴적 분지로 퍼미안 지질기에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퇴적암층에서 이름이 유래합니다. 크기 순으로 Midland Basin, Delaware Basin, Marfa Basin 등의 순서로 세분됩니다. 1920년대부터 첫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1940~50년대에 들어 필드(Field)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생산이 다소 감소하다가 1970년대 들어 회수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다시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산화탄소를 유전내에 주입하여 석유의 회수율을 높이는 증진회수기법(CO_2-Enhance Oil Recovery)을 가장 먼저 시도한 유전지대입니다.

2002년 미국 에너지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퍼미안 분지의 유전은 West Texas 에 존재하는 Oil reservoir(저류층)가 각각 145개, 62개에 달하며, OOIP(Original Oil In Place, 원시매장량)가 954억 배럴, 누적생산량 및 Proved(확인)매장량이 합계 337억배럴로 추산하였으며, 따라서 ROIP(Remaining Oil In Place, 잔존매장량)는 617억배럴이며 2002년 증진회수기법(CO_2-Enhance Oil Recovery)기술로 393억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퍼미안 지대에는 미국 내 대부분의 주요 E&P(Exploration & Production)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로는 Occidental Petroleum Corp, Kinder Morgan Energy Partners LP, Linn Energy LLC, Apache Corp, BP, Concho Resources 등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적 안정성 및 우수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운송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미국 텍사스 및 뉴멕시코 주는 원유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의 성숙한 정치상황 하에 형성된 안정적인 법제도를 바탕으로 투자 장려정책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낮으며 둘째, 선진화된 생산개발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퍼미안 분지 지역은 미국내 가장 큰 유전지대 중의 하나로서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정제, 운송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원유 및 가스는 트럭과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유공장으로 운송되어 제품화된 뒤 미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 Parallel Petroleum LLC 소유 광구 개요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유전은 세계최대 유전지역 중 한곳인 미국 텍사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물산과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100% 자회사인 SONG Parallel과 Ankor E&P Holdings를 통해서 2011년 11월 미국의 Apollo Global Management로부터 각 90% 및 10%의 지분 비율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산 유전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Parallel Petroleum LLC는 7개의 생산 유전 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가 매입할 Parallel Petroleum LLC 유전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산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한 미국 텍사스주 육상광구의 Working Interest (광구에 대한 광업권), 생산 설비 등을 포함한 광구 관련 유무형 자산
광구위치 & 면적	퍼미안 분지 지역 West Texas, Barnett Shale, Gulf Coast 등에 소재 56.6천 에이커 (서울 면적의 약 38%)
Field 내역	- Major Field : Carm-ann, Diamond M, Fullerton, Harris (4개 자산 가치비중 약 93%) - 기타 Field : Barnett Shale, North Penwell, Gulf Coast & East Texas (*) Field(필드) : 유전 또는 가스전을 의미.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원유 혹은 가스의 집적지(또는 상부의 토지구역)로 Parallel Petroleum LLC는 각 Field에 대한 광업권(Working Interest) 지분을 보유하며, Parallel Petroleum LLC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같은 광업권 지분 또는 Field를 통칭하여 동 신고서에는 Parallel 유전으로 지칭
일 생산량	4,750BOED ('12년 8월 월간 평균 기준)
생산정 수	726孔 ('11. 8월 기준)

본 투자회사가 매입할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유전의 매장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원유 (Mbbl)	천연가스 (MMcf)	NGL (Mbbl)	총계 (Mboe)
Proved developed producing (PDP, 확인 개발 가채매장량)	13,173	17,301	842	16,899
Proved developed non-producing (PDNP, 확인 개발 미생산 매장량)	3,669	2,618	514	4,619
Proved undeveloped (PUD, 확인 미개발 가채매장량)	20,545	9,630	2,118	24,268
Total proved reserves (1P, 총 확인 가채매장량)	37,387	29,549	3,474	45,786
Probable reserves (추정 가채 매장량)	10,092	7,957	1,761	13,179
Total 2P reserves (1P+ Probable, 최대 기대 매장량)	47,479	37,506	5,235	58,965

(주 1) 2012 년 6 월 30 일 기준, 출처 : CG&A 매장량 보고서

(주 2) 전환계수 가정 : 6MMcf = 1 Mboe

용어설명

(출처 :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금융감독원) 및 기타자료)

1. 확인 가채매장량(Proved reserves)

- 지질학적·공학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 현재의 경제적 조건(Current Economic Conditions)·운영방법·정부규제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미 발견(Discovered)된 저류층으로부터 상업적(Commercial)으로 회수가능(Recoverable)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시되는 매장량이다. 합리적으로 확실시 된다는 것은 회수가능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거나 또는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확인 가채매장량은 개발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확인 개발 가채매장량(Proved developed reserves)

- 기존 시추정에서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으로, 1차 회수후 추가회수의 경우는 추가회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설치완료되었거나, 설치를 위해 소요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개발로 분류된다.

나. 확인 개발 미생산 매장량(Proved Developed Non-Producing, PDNP)

1) Behind-pipe

- 기존 시추정에서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으로, 평가 시점에

완결구간이 열려있지만 기계적 문제나 파이프라인 연결작업 등이 완료되어있지 않거나 시장여건이 불충분하여 생산하고 있지 않은 매장량을 말한다.

2) Shut-in

- 기존 시추정에서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으로, 생산개시를 위해 추가적인 완결작업이 필요하거나 향후 재완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 확인 미개발 가채매장량(Proved undeveloped reserves)

- 시추되지 않은 지역의 새로운 유정, 기존 저류층보다 더 깊게 파서 새로운 저류층까지 확대된 기존 유정, 매장량 회수를 위한 생산 또는 이동 설비 설치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기존 유정의 추가 생산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유정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확인 원유 가채매장량을 말한다.

2. 추정 가채매장량(Probable reserves)

지질학적·공학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 상업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상업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큰 매장량이다. 즉,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가능 가채매장량(Possible reser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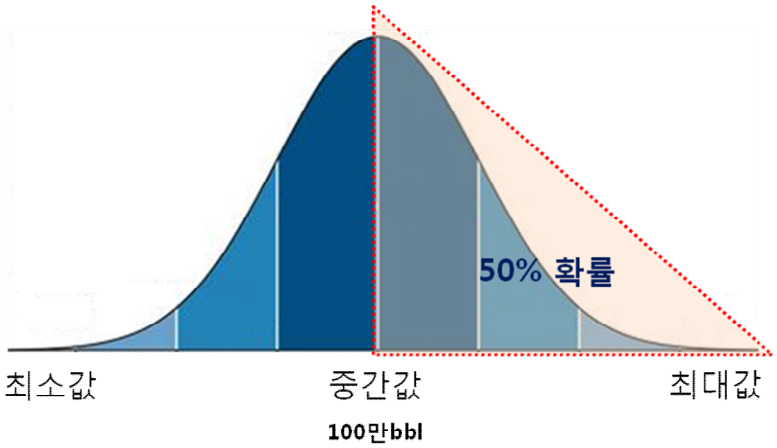
지질학적·공학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 상업적 회수가능성이 추정 가채매장량보다 적은 매장량이다. 확률적으로는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채매장량 인정기준 예시

상기와 같이, 금융감독원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에 따른 가채매장량의 정의에 의하면 실제 회수량이 예측량 “이상”이 될 확률이 적어도 90%(Proved), 50%(Probable), 10%(Possible)라고 명시하였음. 이러한 확률은 유전의 경제성(사업성) 검토시 예측량을 얼마로 인정할 것이라는 인정률과는 다른 개념임.

참고로, 매장량 보고서에서 추정 가채매장량(Probable)을 100만bbl이라고 예측하였을 경우, 하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동 50%라는 확률의 의미는 추정 가채매장량 100만bbl을 감안할때 실제 생산량의 기대값이 100만bbl * 50% = 50만bbl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생산량이 100만bbl보다 클(작을) 확률이 50%라는 의미임.

[추정 가채매장량(Probable)의 인정기준(예시)]



(*) 상기 예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중간값은 일반적으로 매장량 보고서의 예측 매장량 수치를 반영

본 투자회사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39%에 대한 매입가격은 2011년 11월 삼성물산 측과 Apollo Global Management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매입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따르고 있으며, 동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추정 현금흐름 검토시에는 추정 가채매장량(Probable)에 대해 매장량 보고서상 추정 가채매장량(중간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장량 인정률(90%)을 적용하였음.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는 매장량 및 지질구조 관련 data가 많이 확보된 지역이고, 해당 지역에 다수의 시추공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실제 생산량이 중간값에서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위험관리

본 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	위험내용	관리방안
매장량/생산량 예측위험	- 예상 매장량과 실제 매장량의 차이로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 - 예상 생산량 및 시점과 실제 생산량 및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	- 매장량 전문 평가 기관인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이하 “CG&A”)을 통한 매장량 및 생산량 분석 - 대부분의 대상자산이 실제 생산 중인 유/가스전으로 예측 오차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원유가격 변동위험	- 유가 하락에 따른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 - 병목 현상, 재고 증가 등에 의한 가격 하락 위험	- 전체 생산 예상량의 50% 수준에 대해 파생상품 (FWD & Option) 거래를 통한 유가 변동 위험 Hedge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 기준 원유 가격 대비 조정 요소 재무모델에 반영

가스가격 위험	- 가스가격 하락에 따른 현금유입금액 감소 위험	- 최근 10년간 가스가격 변화 추이를 분석시, 최근 가격은 최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 예상됨 -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헤지(Hedge)없이 Naked로 진행 - 기준 가스 가격 대비 조정 요소 재무모델에 반영
환율변동 위험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원화 가치수익률 하락 위험	- 예상된 생산량을 토대로 산출한 현금(USD) 유입액의 50~90% 수준에 대해 파생상품(FWD)거래를 통한 환율변동 위험 Hedge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투자원금 손실위험	- 천재지변 및 유전 소재 지역의 정세 급변에 따른 사업불능 위험 EOD(Event Of Default) 발생 - 유가/가스가격 폭락으로 인한 현금유입 감소 - 실제 생산량이 예상치 하회	-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위험 일정부분 상쇄(단, 보험기간은 10년임) - 외화기준 투자원금에 대한 일부 보존(부보율에 따라 보존율 변동 가능) - 단, 최초 헤지(Hedge) 물량에 미달하는 생산량 부분에 대한 헤지(Hedge) 관련 손실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됨
비운영권자 위험	- 본 투자회사는 광구의 비운영권자로서, 유한책임회사의 비지배지분을 보유하여 광구 운영 참여가 제한 - 본 투자회사의 만기 이전에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운영 위험	- 동 유한책임회사는 자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최대 지분 보유자로서 운영을 담당 - 유한책임회사계약서 (LLC Agreement)상 비운영권자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감소를 위해 삼성물산의 Parallel Petroleum LLC에 대한 지배력이 5년간 유지되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며, 삼성물산측의 지분 매각시 본 투자회사도 동시에 지분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s)을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에 삽입
회수위험	- 적정시점에서의 투자원금 회수 위험 - 자금 유동성 확보 위험	- 펀드 최초설정일로부터 약 7년 이후 명목원금 회수 가능 - 한국거래소에 본 투자회사 상장 후

		유동성(Liquidity) 부여 - 유전 매매가 활발한 미국 현지 시장 사정에 맞추어 본 투자회사 만기시점 지분 매각
운영위험	- 운영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광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국내 자원개발 전문회사인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광구 - Parallel Petroleum LLC 인수시 주요 운영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자원개발 자산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인력을 기보유
판매위험	- 판매처 확보 및 판매라인 변경에 따른 적시 판매 불능 위험	- 미국은 원유 및 가스 시장이 매우 발달하여 있으므로 생산 유전의 경우 소량의 생산물도 즉시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
복구비용 초과위험	- 본 투자회사 기간 종료시, 유정 복구비용이 부족할 위험	- 삼성물산과 협의된 수준에서 복구비 사전 적립
정부위험	- 유전 소재 지역의 정치, 사회적 위험 - 유전 소재 국가 신용도, 계약 안정성	-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해당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 가입을 통해 국가위험 일정부분 상쇄 가능(단, 보험기간은 10년임)
법률/Tax 위험	- 각종 계약서 내용 및 투자 대상국의 법률 및 Tax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	-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통해 최적의 거래 구조 설계 및 이를 통한 Tax 관리
매각가치 / 매각시기 변동 위험	- 본 투자회사 만기시 지분의 매각가치 변동으로 인해 매각에 따른 유입 예상 현금흐름이 변화될 위험 - 지분 매각시점 상황에 따라 본 투자회사 만기와 지분 매각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	- 미국은 유전 거래가 활발한 국가임 - 명목원금 회수 이후(7년 이후)부터는 예정된 본 투자회사 만기 이전이더라도 유가 변동 추이에 맞추어 적극적 매각 활동 진행하여 기존 만기보다 지분 매각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
분배금 감소 위험, 배당 지연 위험	- 투자비 회수 지연,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한 분배금 감소 위험 - Hedge 정산 대금 발생 위험	- 분배를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 마련

	- 생산량 증가를 위한 추가 투자발생시 분배금 감소 위험	
자연재해 및 환경 위험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파괴로 생산이 중단될 위험 -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 규정 변경으로 인한 위험	-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펀드보험을 통해 투자원금의 일정부분 부보 - Parallel 유전 자체적으로 자연재해 피해 및 환경 피해에 대해 부보되는 보험 가입
장외 파생상품 위험	- 원유가격 및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Hedge)하기 위해 선도, 옵션,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의 거래 불이행 위험	- 신용도 높은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며 신용등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유전 투자의 경우 각각의 거래가 개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고서 제출시점에서 비교 또는 참고지수나 수익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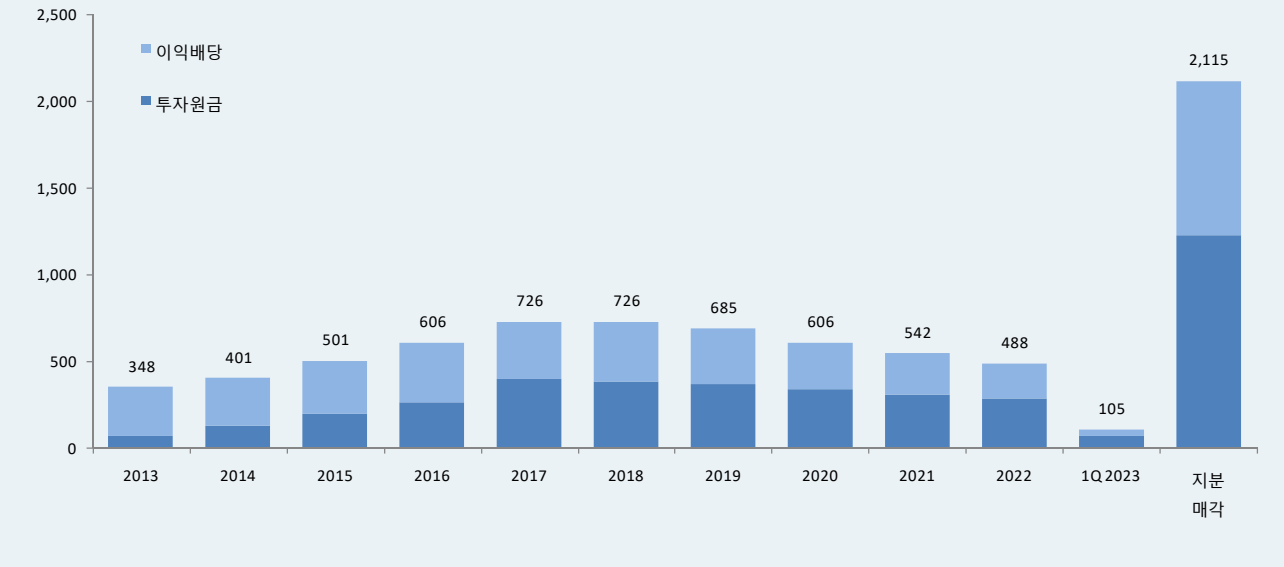
매 결산일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 중 유전의 생산량 예측치를 반영한 예정 원금상환스케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형태로 분배되며, 동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분배금(배당)의 형태로 분배될 계획입니다.

만일 어느 결산기에 발생한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원금상환스케줄에 따른 예상금액을 하회하면, 해당 결산기에는 분배 가능한 금액만이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으로 지급되고, 부족한 투자원금은 다음 결산기로 이월되어 분배되며, 해당 결산기의 이익분배금(배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동 그래프에 사용한 데이터는 가상의 예시용이므로 향후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 및 이익분배금(배당) 스케줄 추정(예시)]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Q 2023	지분매각
투자원금상환	69	127	196	262	397	381	362	334	306	281	64	1,221
이익배당	279	275	305	343	329	345	323	272	236	207	40	894
합계	348	401	501	606	726	726	685	606	542	488	105	2,115

출처) 삼정 KPMG

(주 1) 상기 현금흐름은 본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Parallel 유전 지분 39% 기준

(주 2) 필요 경비 제외 전액 배당 가정, 최종 결산기에는 세후 지분매각 금액 포함하여 배당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투자회사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본 투자회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가하락위험	관계법령은 본 투자회사와 같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본 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본 건 일반공모는 모집설립을 위한 공모에 준하여 주당 공모가액은 모집총액과 발행주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환율 및 개발비 등 본 투자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본 투자회사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번 공모에서 본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하락 또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수입분배는 상장시 모집가액 5,000원(또는 본 투자회사 기간중 원금 상환에 따라 감소하는 주당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투자회사는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에 의해 본 투자회사 1주당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지만, 본 기준가격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향후 본 투자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본 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원본손실위험	본 투자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는 유가, 가스가격, 환율, 생산량 및 개발비 등이 있으며 동 기초변수들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투자회사는 유가 및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감소 위험을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일부 헤지(Hedge)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락으로 인해 본 투자회사의 현금유입액이 감소하거나, 실제 생산량이 예상치를 하회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가입을 통해 일부 위험을 경감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금 및 이익금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및 보험금은 USD 기준으로 결제되므로 보험금 수령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초 헤지(Hedge) 물량에 미달하는 생산량 부분에 대한 헤지(Hedge) 관련 손실은 펀드보험 부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 특수위험, 헤지(Hedge)계약 정산위험, 헤지(Hedge)손실위험 및 보험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본 투자회사의 투자 목적이 정확히 달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며, 본 투자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자의 투자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상품시장 (Commodity Market) 변동에 따른 위험	가) 원유시장 본 투자회사는 원유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만일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이로 인해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시장의 기본

원리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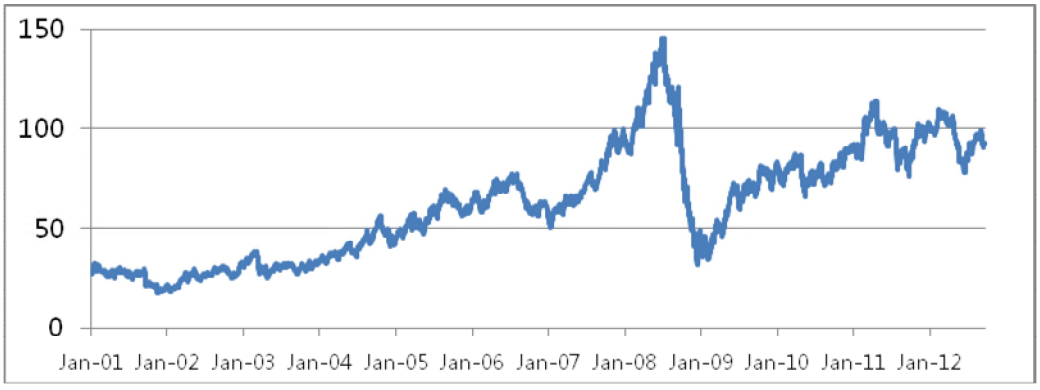
수요의 경우, 경제지표(특히 거시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12년 6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 스페인의 국가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미래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쏟아져 원유는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년 8월 유로존 내부에서 무제한 부실채권 매입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발표되고, 10월 미국에서 3차 양적완화(QE3)가 발표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유가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유 소비국 2위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수요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과 유로존을 필두로 각국에서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체적인 원유 수요가 증가추세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의 경우, 주요 원유생산처인 중동 및 아프리카 연안지역(석유수출국 기구인 OPEC 회원국) 정치적 불안과 원유 시추범위 확대 및 자원 고갈로 인한 시추비용 상승 및 OPEC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NON-OPEC)의 생산량 중 특히, 미국의 생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시리아 내전이 심화되며 공급차질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한 증산계획이 발표되면서 OPEC 지역의 공급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NON-OPEC 지역의 경우, 최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공급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시추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여 NON-OPEC 전체 공급증가율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 특히 산유국의 정치안정도와 자연재해(예. 허리케인 및 지진)로 인한 원유 생산 시설 손상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성이 매우 심하나 전세계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공급에 대한 안정성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공급안정, 수요 증가)이 원유의 완만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나 불가항력적인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0년 이후 원유(WTI,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가(WTI) 가격 추이]

(단위 : USD/bbl)



출처) 블룸버그(Bloomberg), (2001.01.01 ~ 2012.09.30)

이러한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본 투자회사는 예상 원유 생산량의 약 50%에 대하여 가격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파생상품거래를 통하여 원유 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파생상품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헤지(Hedge) 계약 체결 주체	KIP (본 투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헤지(Hedge) 구조	WTI FWD 매도 + 外가격 콜옵션 매수
헤지(Hedge) 기간	KIP가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인수하는 시점부터 7년
헤지(Hedge) 물량 (Notional Quantity)	헤지(Hedge) 기간 내 2P(Proved reserves + Probable reserves)기준 예상 생산량의 50% 수준
행사가격(예상)	$ 89/bbl (Short FWD Strike) + $180/bbl (Long Call Option)

주1)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주2) 2P(Proved reserves + Probable reserve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9.[용어설명]”을 참고

주3) 헤지(Hedge) 실행에 따라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가능함

구체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FWD Sell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 헤지(Hedge) 상대방으로부터 행사가격 이하 하락분을 수령하게 되고, 원유 가격이 FWD Sell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는 헤지(Hedge) 상대방에게 행사가격 이상 상승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원유 가격 하락 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나, 원유 가격 상승 시 이익 실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外가격 콜옵션 (행사가격 $180/bbl 수준)을 매수하여 콜옵션 행사가격 이상 상승분에 대해서는 헤지(Hedge)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유가 급등시 발생할 수 있는 본 투자회사의 헤지(Hedge) 미결제 위험을 축소하게 됩니다.

한편, 헤지(Hedge) 거래를 통해 원유 가격 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나 i) 실제 판매 유가와 헤지(Hedge) 기준 유가인 WTI 가격의 차이, ii) 균등하지 않은 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평균한 실제 판매 유가와 3개월 WTI 근월물 선물 가격의 일 평균 가격의 차이 및 iii) 실제 판매량과 헤지(Hedge) 계약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헤지(Hedge)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WTI 가격 전망]

(단위 : USD/bbl)

2012년	2013년	2015년
97	115	125

(출처: Barclays, 2012.10.5)

나) 천연가스 시장

본 투자회사는 천연가스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만일 국제시장에서 가스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로 인해 현금유입금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간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의 GDP 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았으나 2010년 이후 시추기술 개발로 인한 가스 생산량의 증가로 거시경제보다 미국 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난방 용도로 많이 쓰여 겨울에 가격이 오르고, 여름에 하락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추이]

(단위 : USD/MMBtu)



출처) 블룸버그(Bloomberg), (2001.01.01 ~ 2012.09.30)

생산량 증가로 인해 재고가 늘면서 2010년 이후 2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발전연료로 주로 쓰이는 석탄을 대체하며 여름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절성을 극복하며 2012년 5월 이후 반등하여 꾸준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에 맞추어 가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헤지(Hedge)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전망]

(단위 : USD/MMBtu)

2012년	2013년	2015년

<table>
<tr><td></td><td>
<table>
<tr><td>2.69</td><td>3.25</td><td>4.00</td></tr>
</table>
(출처: Barclays, 2012.10.5)
</td></tr>
<tr><td>환율변동위험</td><td>
본 투자회사는 미국 텍사스 지역에 위치한 Parallel 유전에 투자하며 대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매출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통해 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유전 소재지의 특성상 본 투자회사는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 또한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산 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 가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예상 현금흐름 및 전체 투자금의 50 ~ 90%수준으로 달러 선도 계약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헤지(Hedge) 계약 체결 주체</td><td>KIP (본 투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td></tr>
<tr><td>헤지(Hedge) 상품</td><td>USD에 대한 FWD Sell</td></tr>
<tr><td>헤지(Hedge) 기간</td><td>KIP가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인수하는 시점부터 7년</td></tr>
<tr><td>헤지(Hedge) 물량(Notional Quantity)</td><td>예상 외화 유입액의 50 ~ 90 % 수준</td></tr>
<tr><td>행사가격(예상)</td><td>KRW 1,111.0/USD</td></tr>
</table>
주1)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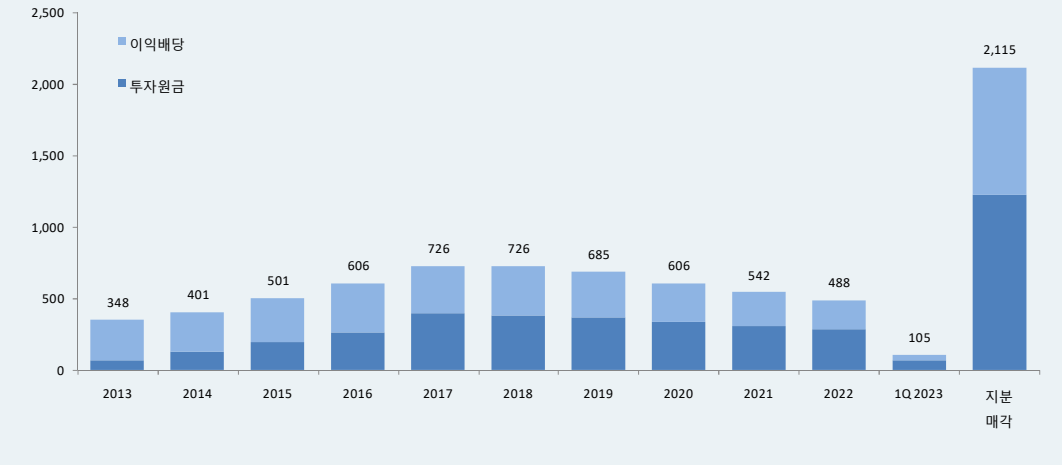
주2) 헤지(Hedge) 실행에 따라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가능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자산에서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은 매 3개월 단위로 정산되고,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 또한 매 3개월 단위로 유입될 예정이므로, 동 스케줄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특정 결제 기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실제 유입 현금액과 헤지(Hedge) 계약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헤지(Hedge)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td><td>
본 투자회사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d></tr>
</table>

정기예금 위험	본 투자회사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	본 투자회사는 원유가격 및 가스가격 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가 및 가스가격 선도거래, 옵션거래 또는 스왑 등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생상품 계약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일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잔여 미정산 계약이 일시에 정산대상 계약이 되어 일시에 총 정산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나, 거래상대방의 잔여 재산 등이 그 청구권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유가, 가스가격,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 위험	본 투자회사는 Parallel 유전의 매장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삼성물산이 제공한 Parallel 유전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한 매장량 평가 자료 및 생산 계획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경우 예측 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예측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현금유입액 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유입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동 그래프에 사용한 데이터는 예시용이므로 향후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원금 및 이익금 배당 스케줄 추정(예시)] (단위:억원)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Q 2023	지분매각
투자원금상환	69	127	196	262	397	381	362	334	306	281	64	1,221
이익배당	279	275	305	343	329	345	323	272	236	207	40	894
합계	348	401	501	606	726	726	685	606	542	488	105	2,115

출처) 삼정 KPMG

(주 1) 상기 현금흐름은 본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Parallel 유전 지분 39% 기준

(주 2) 필요 경비 제외 전액 배당 가정, 최종 결산기에는 지분매각 금액 포함하여 배당

삼성물산이 제공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자료는 세계적인 매장량 평가기관인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이하 "CG&A")의 자료로서, 본 투자회사는 국내에서 유전관련 기술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이앤피㈜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해당 CG&A의 예측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매장량 및 생산량과 실제 매장량 및 생산량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분배금(배당) 및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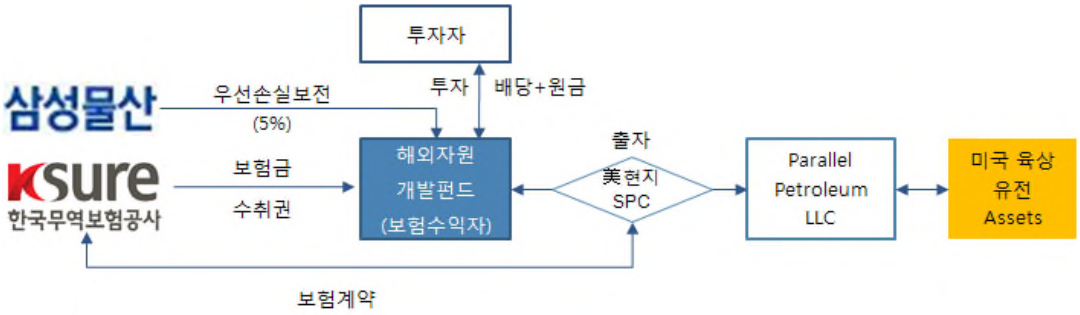
한편, 석유회수는 크게 1차 회수 (Primary Production), 2차 회수(Secondary Production), 3차 회수 혹은 증진 회수 (Tertiary Production 또는 EOR: Enhanced Oil Recovery) 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미국 에너지청의 2002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미국내 유전의 경우 약 37%가 1차 회수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51%가 2차 회수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12%가 3차 회수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Parallel 유전의 경우 1차 회수 및 2차 회수 단계 방법을 통해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에 따른 매장량 감소에 따라 1차 회수가 어려워지면 2차 회수를 통한 생산이 증가할 수 있고, 3차 회수를 통한 생산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현금 유입액 추정시 이와 같은 2차 회수까지의 회수 방법 전환과 이에 따른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와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 추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수방법 전환 및 이에 따른 CAPEX 및 OPEX의 실제 금액이 예상과 달라짐에 따라 실제 현금 유입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익분배금(배당) 및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Discount 위험	본 투자회사는 기존 Parallel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WTI(West Texas Intermediate, Cushing 지역 지표가격)가격에 대비 상대적으로 할인(Discount)되어 판매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가격 Discount를 향후 수익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WTI 가격의 지표가 되는 지역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Cushing 지역으로, 동지점은 뉴욕상품거래소(NYMEX) WTI 선물계약의 현물 인도지점입니다. 동 Cushing 지역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의 경우 미국내 주 원유 수요처인 중부 및 동부 산업지대와 가까우며, 멕시코만 인근 항만과도 가깝다는 점에서 WTI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으나, Cushing 지역 기준 서부 지역(Parallel 유전이 위치)의 경우 Cushing 지역을 포함한 미국 중·동부 수요처와 멕시코만 인근 항만과 거리를 두고 있음에 따라 Pipeline 등을 통한 추가 운송이 필요하여 이런 이유로 WTI 기준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Parallel 유전 생산 원유의 WTI 대비 가격 할인의 경우 운송 Pipeline 증설 혹은 기타 상황 변화, Cushing 지역의 원유 재고 수준의 변화, Cushing 기준 동부 지역의 생산량 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할인요인이 사라질 수 있으며, 할인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율이 증가할 경우 본 투자회사의 예상 현금 유입액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Parallel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 역시 Index가 되는 Henry Hub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할인(Discount)되어 판매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가격 Discount를 향후 수익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Henry Hub 가격의 지표가 되는 Henry Hub 지역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지점은 뉴욕상품거래소(NYMEX) Natural Gas 선물계약의 현물 인도지점입니다. 상기 설명된 원유와 마찬가지로 Parallel 유전 지역은 Henry Hub 지역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외 미국내 천연가스 주 수요처인 동부 지역과 거리를 두고 있음에 따라 Henry Hub 기준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Parallel 유전 생산 가스의 Henry Hub 가격 대비 할인 역시 천연가스 운송과 관련된 환경 변화 및 주 수요처인 동부지역의 생산, 수요 및 재고 변동에 따라 할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할인율이 변동할 수 있으며, 할인율이 증가시 본 투자회사의 예상 현금 유입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배당감소 위험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P는 삼성물산이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보유를 위해 설립한 PLL Holdings LLC로부터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양수받게 됩니다. KIP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와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받게 되며, 예상되는 CAPEX 및 OPEX 투자액을 감안하여 현금유입액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본 투자회사의 투자 기간 중 예상 생산량 및 유가와 실제 생산량 및 유가 변동에 따른 현금유입액 변동과 더불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CAPEX 및 OPEX 지출액이 예상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예상된 현금유입액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헤지(Hedge) 계약체결 위험	신고서 작성일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삼성물산과 “Parallel 유전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본 협약서에 따라 최종 지분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동 과정에서 시장 상황(유가의 급변 등) 등의 이유로 헤지(Hedge) 유가 및 목표 헤지 물량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체결)되지 못할 경우 최종 지분매매계약(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한 행

	사가격에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예시 수익율에서 실제 수익율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헤지(Hedge) 계약정산 위험	본 투자회사는 투자대상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원유의 시장가격 변동(가격하락) 위험 및 환율하락(원화절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Hedge Bank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KIP를 통해 체결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 계약을 위한 여신 한도의 확보 및 헤지(Hedge) 거래의 결제/정산 등을 담보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의 청구권 및 본 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Hedge Bank에 대해 포괄적으로 선순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헤지(Hedge)거래의 결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한 후 투자원금 및 이익분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제 원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수익 중 일정부분이 회사내 유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 현금흐름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 유보를 못하거나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헤지(Hedge)거래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헤지(Hedge)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어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헤지(Hedge)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매각 또는 본 투자회사가 가입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으로 손실의 일정부분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거래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 금액이 부족한 경우 자산 매각대금 또는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헤지(Hedge)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금액으로 일차적으로 사용되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지(Hedge) 거래가 종결된 사유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부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서 헤지(Hedge)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 Hedge 계약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정산시 거래 상대방인 Hedge Bank의 거래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도 높은 금융기관과 장외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헤지(Hedge) 손실 위험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해 헤지(Hedge) 정산금 미결제 상황이 발생하여 헤지(Hedge) 계약 당시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수령받지 못할 경우 본 투자회사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파생

	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헤지(Hedge)계약시 예상한 규모(Notional Quantity)와 실제 규모(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USD 유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상한 헤지(Hedge)효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시 파생상품 거래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담보집행시 권리관계 혼재 위험	본 투자회사는 KIP를 통해 Hedge Bank와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동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IP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 및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유전에 대한 광업권(Working Interest)과 그외 자산(예금계좌 등)의 각 39%를 Hedge Bank에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물산 측 역시 PLL Holdings LLC를 차주로 하여 체결할 예정인 대출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LL Holdings LLC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61% 및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유전에 대한 광업권(Working Interest)과 그외 자산(예금 계좌 등)의 각 61%를 대주측에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투자회사측에서 Hedge Bank에 제공하는 담보 및 삼성물산측에서 PLL Holdings LLC의 대주측에 제공하는 담보는 각각 위 비율(39:61)대로 분리하여 담보가 설정되고 집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하는 광업권 외 일부 자산(예금계좌) 등의 경우 분리하여 담보를 설정하기가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집행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하여도 위 비율에 따른 담보 설정 및 집행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약정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투자회사측의 채권자인 Hedge Bank와 삼성물산 측 대주가 되는 은행간에 Intercreditor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 Intercreditor Agreement에는 본 투자회사측 혹은 삼성물산측의 일방의 담보집행 사유 발생시 담보 집행에 따른 회수금액을 각 당사자가 Parallel Petroleum LLC 및 Parallel Petroleum LLC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의 비율인 39:61로 나누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보험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석유, 가스, 철 등 해외자원의 탐사·개발·생산 사업에 투자하여 비상위험, 신용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1) 美 현지 SPC명: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

보험가입시 본 투자회사는 보험금을 일시납하고, 이후 보험계약상 명기된 손실 발생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맺는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담보위험	- 비상위험: 피투자국의 수용, 전쟁, 혁명, 사업권침해, 송금제한 등 - 신용위험: 피보험투자상대방(차주)의 파산, 채무불이행 - 사업위험: 투자만료시 원금손실 등(유가, 생산량 위험이 포함됨)
보상손실	-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주식 등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 단, 최초 헤지(Hedge) 물량에 미달하는 생산량 부분에 대한 헤지(Hedge) 관련 손실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됨
보험가액	외화기준 취득대가(원금, USD 301,894,010)
자기책임 부담금	보험가액 × 15%(주1)
인수가액	보험가액 – 자기책임부담금
부보율	100%
보험금액	인수가액 × 부보율
부보통화	USD
보험기간	10년

(주1) 상기 자기책임부담금 15% 중 보험가액×5% 상당액은 삼성물산이 하기의 조건으로 자기책임부담금을 본 투자회사보다 우선하여 손실 부담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우선 손실부담이 없을 때 보다 투자회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삼성물산의 신용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 우선손실 보전 상당액은 삼성물산의 부도 등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보상위험	- 비상위험: 피투자국의 수용, 전쟁, 혁명, 사업권침해, 송금제한 등 - 신용위험: 피보험투자상대방(차주)의 파산, 채무불이행 - 사업위험: 투자만료시 원금손실 등(유가, 생산량 위험이 포함됨)
보상손실	- 외화기준 취득대가(USD 301,894,010)에서 기 회수금액을 차감하고 헤지(Hedge)를 위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정산손익을 가감(손실은 가산하고 이익은 감액함)하여 산정 - 단, 손실 방지·경감 의무(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제11조에 준함)와 권리보전 의무(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제14조 제1항에 준함)를 KIP가 부담하며, KIP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보상 손실액에서 제외
보상한도	- 외화기준 취득대가(원금, USD 301,894,010) × 5%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참고로 매입원금대비 손실비율에 따른 투자 손실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비율(매입원금대비)	투자회사 손실부담 비율(매입원금대비)
5%	0%
10%	5%
15% 이상	10%

(주2) 부보율 및 자기책임부담금은 보험료 납부시 최종 확정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심사 결과 결정되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실제생산량이 없어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보험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더라도 보험금의 회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Hedge Bank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유가격 및 환율의 헤지(Hedge)를 정산하게 될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Hedge Bank와의 헤지(Hedge)정산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되며, 잔여 보험금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가 부보받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동법 제17조에 의한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 상황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동 비상 상황시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본 투자회사와 협의한 가격으로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동 경우,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1-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및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위험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로서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P는 삼성물산이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보유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한 PLL Holdings LLC로부터 유한책임회사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양수받게 됩니다. 본 투자회사가 수행한 현금 유입액 예상에 따르면, 펀드 최초설정일로부터 약 7년 이후 명목원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 및 이에 따른 현금 유입액, 이에 따른 Hedge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명목원금의 회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투자회사는 동법 제14조에 의해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개별 매수자와의 장외 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것 외에는 운용기간 중 투자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기간 중 투자자의 투자원금 회수를 돕기 위해 본 투자회사는 발행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설정 이후 90일 이내 상장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가 KIP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은 본 투자회사 만기시점까지 매각하며, 본 투자회사 청산을 통해 투자자들이 Exit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 매각의 경우 유전 매매가 활발한 미국 현지 시장사정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지분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하기 '매각가치 / 매각시기 변동 위험'에 기술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가치 / 매각시기 변동 위험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는 Parallel Petroleum LLC가 지급하는 원유·가스 등의 판매수입을 기반으로 한 분배금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또는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 매각 금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 투자회사는 매각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SONG Parallel과 본 투자회사가 체결한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에 따르면,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의 매각을 통한 Exit시에도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 39%를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삼성물산측이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매각가치 산출시에는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을 매각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따라서 Parallel Petroleum LLC에서 발생하는 G&A Cost(일반관리비)는 매각가치 산출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본 투자회사로 유입이 예상되는 총 현금 중 배당 수익과 매각가치의 비율은 각각 72.3% 및 27.7% 입니다.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는 만기 시점의 매각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되며, 한편 지분 또는 광업권 매각시점 상황에 따라 본 투자회사 만기와 지분 매각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전의 매각이 활발한 지역이며 미국내 유전을 포함한 광업권 매매 현황 및 삼성물산과의 합의 내용 고려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혹은 보유 광업권의 매각 불가능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본 투자회사는 매각가치 변동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정 이후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각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정된 본 투자회사 만기 시점까지 지분 매각이 완료되지 않는 위험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Parallel 유전 지분 매각시 본 투자회사 보유 지분매각을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Tag-along 규정을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에 삽입하여 지분 매각에 따른 위험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미국내 광업권 매매 현황	- 현재, 미국에서는 유전을 포함한 광업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내 2005-2011.11월 유전 거래내역 건수 : 총 1,435건 (연평균 205건) (출처 : IHS Herold)
삼성물산과의 합의 사항	- 본 투자회사는 삼성물산의 지분매각에 대하여 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 보유 - 삼성물산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잠재 Buyer와의 매매가 기준으로 삼성물산에 매각

참고로, 매각가격 변동으로 인한 회수 현금 및 수익률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백만원)	기본안-10%	기본안	기본안+10
분배금 총액 (매각가치)	763,615 (190,332)	784,763 (211,480)	805,911 (232,628)
투자 수익률(IRR)	약 11% - 0.3%	약 11%	약 11% + 0.3%

주1) Parallel Petroleum LLC 의 분배가능 금액에 39%의 KIP/본 투자회사 지분율 및 정산과정 소요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여 가정한 수치입니다.

운영(Operation) 위험

Parallel 유전은 현재 Parallel Petroleum LLC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동 Parallel Petroleum LLC는 SONG Parallel(국내 자원개발 전문회사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NKOR E&P Holdings(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ONG Parallel 및 ANKOR E&P Holdings은 신규로 설립될 PLL Holdings에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양도할 계획이며, 삼성물산측(PLL Holdings LLC)과 KIP간에 체결할 예정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에 근거하여 삼성물산(PLL Holdings LLC) 및 Parallel Petroleum LLC가 대상 자산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더불어 대상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광구별로는 Parallel Petroleum LLC가 일부의 광구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타 지분 보유자와 각 광구별 공동운영계약서(Joint Operating Agreement)에 근거하여 각 광구별로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Parallel Petroleum LLC의 운영인력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설립일시	1979년
법적형태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주	・SONG Parallel (90%) & ANKOR E&P Holdings (10%) - 본 매각거래 종결 시점까지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PLL Holdings LLC를 설립하여 PLL Holdings LLC가 Parallel Petroleum LLC의 100% 주주가 될 예정
직원수	・총 56명 (2012.8월 기준, 계약직 포함) ・삼성물산은 운영 및 재무관련 인원 파견 (2명) ・기능별 인원(명)

구분	직원	계약직
Admin & IT	3	2
Accounting	12	0
Land	7	1
Operators		
- Office	13	1
- Field	13	4
Total	48	8

운영자산	・Parallel 유전의 생산 및 개발/탐사자산 운영

삼성물산은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미국 멕시코만 지역 해상 유전인 ANKOR 유전을 성공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물산에서 Parallel Petroleum LLC를 인수시 Parallel 유전을 보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온 동사의 전문가 인력을 대부분 고용 승계하였으며, 특히 기존 Parallel Petroleum LLC를 설립한 기존 CEO인 Larry C. Oldham이 계속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td><td>현재 Parallel Petroleum LLC의 유가스 전문가는 15명(Licence 보유자 9명)(2011.8월 기준)으로 평균 경력은 25년 이상으로 기존 Parallel 유전 개발 및 생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등 유전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게 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위험들은 삼성물산 및 Parallel Petroleum LLC의 실제 Parallel 유전 운영 전문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으며, 본 투자회사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 및 그외 거래 관련 계약상 이와 같은 비운영권자로서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비운영권자 위험' 부분, [별첨2 공동운영계약서(Joint Operating Agreement)] 및 [별첨3-1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판매 위험</td><td>본 투자회사가 투자한 Parallel 유전은 미국내 최대 원유 산지 중 하나인 미국 텍사스주 Permian Basin(퍼미안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는 미국내 주요 E&P(Exploration & Production)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원유 및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시설 등)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원유 및 가스 시장은 잘 갖춰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 전역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Parallel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td></tr>
<tr><td>복구비용 적립 위험</td><td>본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인 Parallel 유전은 유정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을 상실하거나 고갈되어 철수할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유정을 폐쇄하여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해당 복구비용의 적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복구비용 적립에 따라 본 투자회사의 현금 유입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법률 관련 위험</td><td>본 투자회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본 투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KIP에 출자하게 되며, KIP는 삼성물산이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보유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할 PLL Holdings LLC로부터 유한책임회사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양수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 투자회사는 KIP를 통해 Parallel Petroleum LLC의 39%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각 거래당사자들은 본 거래의 완료를 위해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와 지분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이하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s)")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투자회사는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s)를 체결하기 이전, 본 거래 관련자들간 본 거래 계약 체결과 관련한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계약 목적</td><td>최종 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 관련 사항 및 각 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한 협약서</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계약 당사자</td><td>- 최종 거래 관련 계약 체결 이전에 설립되어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될 PLL Holdings LLC의 90%의 주주가 될 SONG Parallel
- 한국투자 Parallel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 (지분증권)</td></tr>
<tr><td>본 거래 계약 체결 관련</td><td>- SONG Parallel은 PLL Holdings LLC를 설립하며,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양도하여 최종 거래 계약은 PLL Holdings LLC와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될 미국 SPC인 KIP간 체결하도록 함
- 본 계약 체결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임에도 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효과 중 39%에 상응하는 부분을 본 투자회사가 향유하도록 상세 조건 본 계약에 반영
- PLL Holdings LLC가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본 투자회사에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부여하며, 본 투자회사의 만기시 지분 제3자 매각에 협조하는 내용
- 그외 본 계약 체결시 반영될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한 기본 협약</td></tr>
<tr><td>본 거래 인수가액 산정 방법</td><td>- 기본적으로 본 거래는 2011년말 기준으로 삼성물산(SONG Parallel), 한국석유공사(ANKOR E&P Holdings) 등과 함께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도록 인수가액 산정
- 기존 Parallel Petroleum LLC의 경우 광업권을 담보로 은행 차입을 진행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PLL Holdings LLC에서 동 차입금을 승계하여 Parallel Petroleum LLC 는 차입금이 없도록 진행
- 기존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탐사자산의 경우 PLL Holdings LLC로 이전하며, 인수 기준금액 시점부터 실제 인수일까지 기간 탐사자산 발생 손익부분 정산
- 본 거래 계약체결시 인수가액 산정방식
* 인수기준금액
(USD milion)
(+) 주식인수금액 (a) $543.50
(+) RBL 차입금 (b) $250.00
(-) 제외대상 유가스자산 (c) ($20.04)
대상회사 인수기준금액 $773.46
지분율 39.0%
인수기준금액 $301.65
* 적용 인수금액
(USD milion)
인수기준금액 $301.65
(+) 이자비용 분담액 $6.06
인수기준금액 $307.71</td></tr>
</table>

	(*) 이자계상액은 인수 기준금액에 2011년 12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3M Libor rate+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금액임. 상기 인수금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보험가액이 되는 외화기준 취득대가(USD 301,894,010)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가액 산정시 3분기까지의 이자계상액 및 총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임.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P는 상기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이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보유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할 PLL Holdings LLC로부터 유한책임회사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양수받게 되며, 본 투자회사는 KIP를 통해 Parallel Petroleum LLC의 39%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 및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들은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상에 반영되어 있고 지분 취득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은 지분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 상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상 본 거래와 관련한 법률 관련 위험들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3-1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 및 [별첨3-2 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운영권자 위험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인 KIP를 설립하고 KIP가 대상 자산을 보유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보유한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대상 자산의 운영 및 Parallel Petroleum LLC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에 근거하여 Parallel Petroleum LLC 및 동 회사의 61% 주주인 PLL Holdings LLC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KIP는 Parallel Petroleum LLC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나, 여전히, 유전의 운영을 본 투자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비운영권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LL Holdings LLC의 실질적인 주주인 삼성물산은 자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회사로서 Parallel 유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투자회사는 비운영권자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시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에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구조의 변경 및 기타 운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정시 KIP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시켜 비운영권자 위험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삼성물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Monitoring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 만기 이전 실질적 운영권자인 삼성물산 측의 지분을 매각이 있을 경우 본 투자회사가 Parallel 유전의 운영 위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이와 같은 삼성물산측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감소를 위해 삼성물산의 Parallel Petroleum LLC에 대한 지배력이 5년간 유지되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삼성물산측의 지분 매각시 본 투자회사도 동시에 삼성물산측의 지분매각 금액과 동일하게 지분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s)을 유한책임회사계약서(LLC Agreement)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경영진 위험	본 투자회사는 Parallel 유전의 비운영권자로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 보유를 통해 Minority 주주로 참여함에 따른 경영진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Parallel Petroleum LLC는 자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최대주주로서 운영할 예정이고, Parallel Petroleum LLC에 대한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체결 및 삼성물산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비운영권자 위험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재무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한 금액은 미국 텍사스주 소재 육상 유전인 Parallel 유전에 대한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설립한 PLL Holdings LLC로부터 美 Delaware州 소재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인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를 통해 취득하는데 사용합니다. 본 투자회사는 설정기간 동안 Parallel Petroleum LLC로부터 매 분기마다 Parallel 유전에서 산출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세후 판매수익을 지급받아 비용 등 지급 후 잔여액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운용종료시점에 KIP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Exit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able>
<tr><td></td><td>재무 관련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매입 가격은 2011년 11월 삼성물산측과 Apollo Global Management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매입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동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본 투자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정KPMG를 통해 설립부터 운용, 매각까지 총 10년(본 투자회사의 운용기간)동안의 추정 현금흐름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의사결정시[별첨4- 현금흐름 및 수익률 산출 내역]의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자연재해 및 환경 관련 위험</td><td>본 투자회사가 39%의 지분을 소유할 Parallel Petroleum LLC는 자연재해 및 환경 관련 위험에 대비하고 유전자산 및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General Property & Liablilty Insurance Package(일반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기 보험 상품은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한 1) 유전자산, 건물 등의 재산상 피해보상 2) 유가스자산 등에 기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이 부보 대상입니다. St. Paul Fire & Marine Insurance Company가 보험 인수사이며, 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보험 Coverage</th><th>보 험 금 액</th><th>Deduction (공제)</th></tr>
<tr><td>손해보험
(Property protection)</td><td>- 유전자산, 장비, 건물 등과 관련된 물리적 손상 등에 대한 보상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에 의한 경우 제외</td><td>- 사전에 명세서에 명기된 각 시설물별 보상 금액에 따름</td><td>- 각 사고에 대해 약 $1천 공제</td></tr>
<tr><td>책임보험
(Liability Protection)</td><td>- 유가스자산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인명피해, 오염복구비용, 보유자산으로 인한 타인손실 등을 부보하며, 전쟁, 테러 등에 의한 사고는 제외)

-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td><td>- 유가스자산 관련 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2백만 한도 우선 보상 후 초과 손실에 대하여는 $2천만 한도 추가 보상

-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건당 $1백만 한도, 총 $3백만 한도 보상</td><td>- 각 사고에 대해 약 $1천 공제</td></tr>
</table>
상기 보험상품은 Parallel Petroleum LLC가 보유한 자산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 명세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가스자산 관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보험으로 2백만불 한도로 우선 보상 후, 초과손실분에 대해 2천만불 한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의 부보에도 불구하고 Parallel Petroleum LLC 피해의 규모나 책임의 범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본 투자회사의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보험상품과는 별도로 [보험관련 위험]에서 상술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부보대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본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 본 투자회사의 주식은 공모를 통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이후 회사 청산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

	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예상보다 풍부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 관련 위험	환매시(환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기구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제한 위험	본 투자회사는 투자대상 별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한도액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제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각종 계약내용 및 투자대상국의 법률 및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 진행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환경규제 등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 조세 제도의 변화 등으로 예상된 투자이익이 낮아지거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본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있으나, 실제 해당 주식의 시장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유동성, 그외 시장에서의 가격 기대치와의 차이로 인해 산정되어 고시되는 공정가액과 시장 형성 주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시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본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회사를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회사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존속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저순자산액 미달 관련 위험	투자회사의 경우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본 신고서 작성 시점에 파악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 및 작성하였으나, 작성시점에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잠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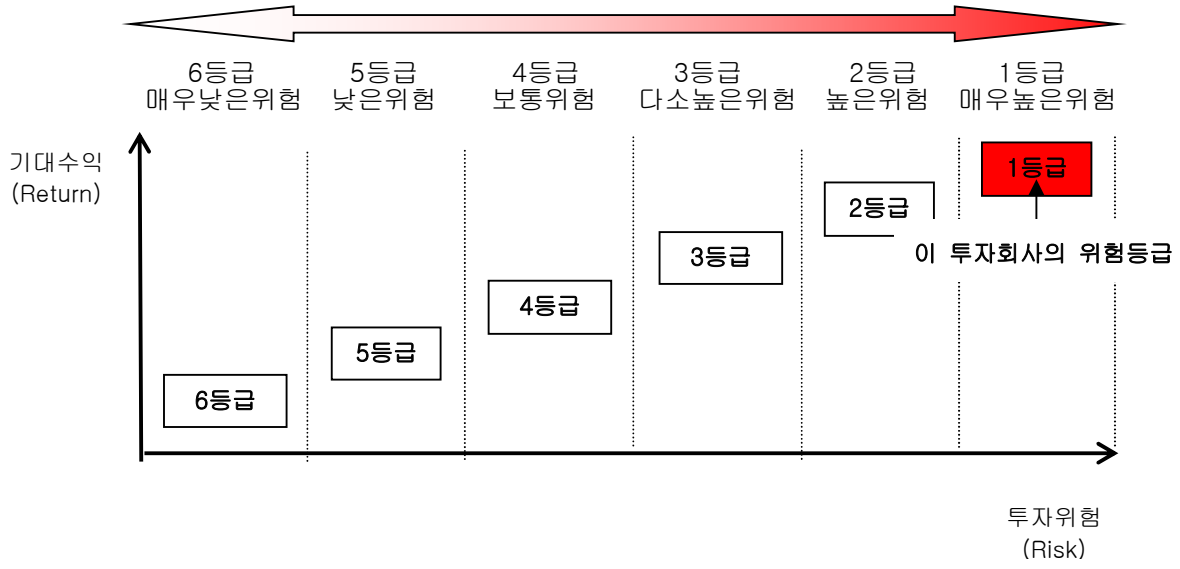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본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Parallel 유전을 보유한 Parallel Petroleum LLC의 지분 39%를 보유한 KIP의 지분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의 변동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내 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키는 실물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①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담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7.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청약방법

판매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하며,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청약기간은 2013년 1월 23일 ~ 25일(3영업일)까지입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3년 1월 29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3년 1월 29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다만,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주 이상 80,000,000주 이하, 기관투자자의 경우 20,000주 이상 80,000,000주 이하로 합니다. 청약한도의 상한을 초과한 청약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청약한도의 하한에 미달한 청약은 그 전체에 대하여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각 판매회사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합니다.

⑦ 각 청약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모집 주식의 수		8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확정가액	5,000원
모집총액	확정가액	400,000,000,000원
최저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200주/기관투자자 20,000주
최고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80,000,000주/ 기관투자자 80,000,000주
청약단위		200주 이상 2,000주 이하: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20,000주 이하: 2,000주 단위 2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2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200,000주 초과: 20,000주 단위
청약기간	일반모집	개시일	2013년 1월 23일
		종료일	2013년 1월 25일
	기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기타		-
납입기일			2013년 1월 2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주1), 주2)			매년 3월 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 - 투자회사 설립연도: 2012년 6월 13일 - 투자회사 청산연도: 당해 회사 청산일

(주 1) 각 사업연도별 배당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결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본 투자회사의 예상 배당과 관련 내용은 "제 2 부.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본 건 청약시 청약증거금율을 100%로 하였으며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금액만큼 환불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주식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본 투자회사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환매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인 개인이 사망한 때 또는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화의신청·해산하는 때 (정관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한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 가능)
2. 정관 제 3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관 제 67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3)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는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회사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주식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인 투자자가 환매를 할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정관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정관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4) 주식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5) 주식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주식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회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본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6) 주식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회사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회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본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

[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본 투자회사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상기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00분의 5)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 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 취득가격 3. 실물자산등 관련 지분증권 : 취득가격 4. 실물자산등 관련 채무증권(대출채권을 포함) : 취득가격으로 하되, 발생이자는 일별부리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운용담당 본부장, 마케팅담당 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위험관리담당부서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본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본 투자회사의 주주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주식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주1)	환매시

(주 1) 원칙적으로 환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정관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비용)	증권 거래비용
-	0.1500	0.0100	0.0150	0.0350	0.2100	0.0680	0.5180	1.6200	-
부과시기	정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 1) 집합투자업자보수는 RG 자산운용의 위탁업무에 따른 보수 0.050 (연간, %)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주 2) 기타비용으로는 해외자원보험료, 인수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감사보수 및 기타 운영비용 등 본 투자회사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상비용 등(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외화로 지급할 경우 환율에 의해 변동 가능)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예상금액 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투자회사의 정관 제 60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표에 반영된 보수비율은 모집총액 대비 예상 기타비용(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본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은 제외)의 비율을 본 투자회사 설정기간으로 나눈 수치 입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투자회사와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5) 총보수·비용 비율은 본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중 하기에 명기된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한 비율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중 하기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한 비율이 합산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외화로 지급할 경우 환율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회사 존속기간 중 총 예상 기타비용]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예상)	비고
총액인수수수료	14,000	납입금액의 3.5%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료	11,220	
기술자문수수료	2,077	기술, 법률, 재무자문 등
합계	27,297	

(주)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투자회사의 정관 제 60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 60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회사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주주명부 관리비용
5.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6.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회사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차입금의 이자
11. 해외자원개발보험료
1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13. 법무, 회계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위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기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기타 회사의 모집·운영 및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총보수 · 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 산정

상기 보수 및 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총보수·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보수 및 비용 총액	39,958	
② 순자산 연평잔액	259,460	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총보수·비용 비율	15.4%	①÷②

(주 1) 투자회사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총보수비용을 결산에 따른 분기별 이익배분 및 원금배분을 감안한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투자회사 존속기간 전체의 총보수·비용 비율입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7	775	812	887	99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보수를 누적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며, 위에 기재한 기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 2) 평잔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는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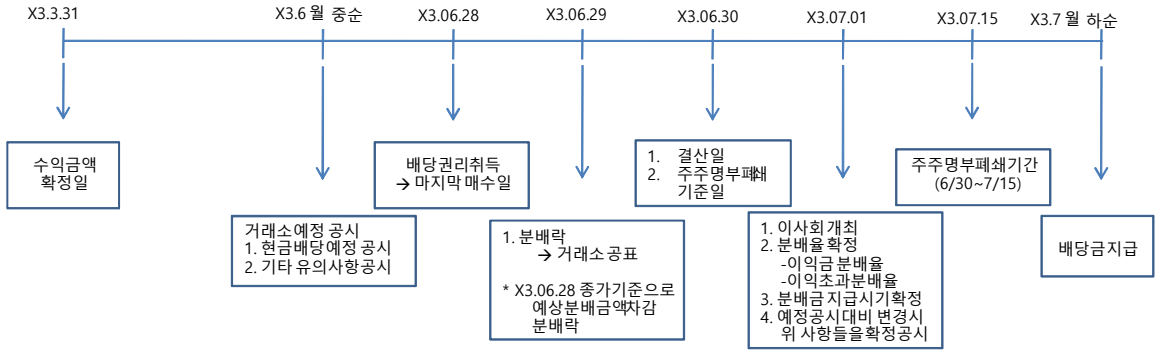
(주 3)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를 감안한 투자기간 별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 4) 본 투자회사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총 비용비율을 토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본 투자회사는 회사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사업년도 종료 후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익금 분배를 유보합니다.



(주 1) 예시 흐름도이며, 상기에 예시된 일자들이 모두 영업일임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용 과정중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투자회사의 결산 일정입니다. 다만, 본 결산 일정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	종류	수익대상기간	회계연도말	분배금 지급 시기(예정)
1기	정기	-	2012. 12. 31.	-
2기	정기	2012. 01 ~ 2013. 03.	2013. 03. 31.	2013년 04월 하순
3기	정기	2013. 04 ~ 2013. 06	2013. 06. 30.	2013년 07월 하순
4기	정기	2013. 07 ~ 2013. 09	2013. 09. 31.	2013년 10월 하순
5기	정기	2013. 10 ~ 2013. 12	2013. 12. 31.	2014년 01월 하순
6기	정기	2014. 01 ~ 2014. 03	2014. 03. 31.	2014년 04월 하순
7기	정기	2014. 04 ~ 2014. 06	2014. 06. 30.	2014년 07월 하순
8기	정기	2014. 07 ~ 2014. 09	2014. 09. 30.	2014년 10월 하순
9기	정기	2014. 10 ~ 2014. 12	2014. 12. 31.	2015년 01월 하순
10기	정기	2015. 01 ~ 2015. 03	2015. 03. 31.	2015년 04월 하순
11기	정기	2015. 04 ~ 2015. 06	2015. 06. 30.	2015년 07월 하순
12기	정기	2015. 07 ~ 2015. 09	2015. 09. 30.	2015년 10월 하순
13기	정기	2015. 10 ~ 2015. 12	2015. 12. 31.	2016년 01월 하순
14기	정기	2016. 01 ~ 2016. 03	2016. 03. 31.	2016년 04월 하순
15기	정기	2016. 04 ~ 2016. 06	2016. 06. 30.	2016년 07월 하순
16기	정기	2016. 07 ~ 2016. 09	2016. 09. 30.	2016년 10월 하순
17기	정기	2016. 10 ~ 2016. 12	2016. 12. 31.	2017년 01월 하순
18기	정기	2017. 01 ~ 2017. 03	2017. 03. 31.	2017년 04월 하순
19기	정기	2017. 04 ~ 2017. 06	2017. 06. 30.	2017년 07월 하순
20기	정기	2017. 07 ~ 2017. 09	2017. 09. 30.	2017년 10월 하순
21기	정기	2017. 10 ~ 2017. 12	2017. 12. 31.	2018년 01월 하순
22기	정기	2018. 01 ~ 2018. 03	2018. 03. 31.	2018년 04월 하순
23기	정기	2018. 04 ~ 2018. 06	2018. 06. 30.	2018년 07월 하순
24기	정기	2018. 07 ~ 2018. 09	2018. 09. 30.	2018년 10월 하순
25기	정기	2018. 10 ~ 2018. 12	2018. 12. 31.	2019년 01월 하순
26기	정기	2019. 01 ~ 2019. 03	2019. 03. 31.	2019년 04월 하순
27기	정기	2019. 04 ~ 2019. 06	2019. 06. 30.	2019년 07월 하순
28기	정기	2019. 07 ~ 2019. 09	2019. 09. 30.	2019년 10월 하순
29기	정기	2019. 10 ~ 2019. 12	2019. 12. 31.	2020년 01월 하순
30기	정기	2020. 01 ~ 2020. 03	2020. 03. 31.	2020년 04월 하순
31기	정기	2020. 04 ~ 2020. 06	2020. 06. 30.	2020년 07월 하순
32기	정기	2020. 07 ~ 2020. 09	2020. 09. 30.	2020년 10월 하순
33기	정기	2020. 10 ~ 2020. 12	2020. 12. 31.	2021년 01월 하순
34기	정기	2021. 01 ~ 2021. 03	2021. 03. 31.	2021년 04월 하순

시기	종류	수익대상기간	회계연도말	분배금 지급 시기(예정)
35기	정기	2021. 04 ~ 2021. 06	2021. 06. 30.	2021년 07월 하순
36기	정기	2021. 07 ~ 2021. 09	2021. 09. 30.	2021년 10월 하순
37기	정기	2021. 10 ~ 2021. 12	2021. 12. 31.	2022년 01월 하순
38기	정기	2022. 01 ~ 2022. 03	2022. 03. 31.	2022년 04월 하순
39기	정기	2022. 04 ~ 2022. 06	2022. 06. 30.	2022년 07월 하순
40기	정기	2022. 07 ~ 2022. 09	2022. 09. 30.	2022년 10월 하순
41기	정기	2022. 10 ~ 2022. 12	2022. 12. 31.	2023년 01월 하순
42기	정기	2023. 01 ~ 2023. 03	2023. 03. 31.	2023년 04월 하순

(주 1) 수익대상기간 : 원유 및 가스 판매대금에 대한 수익이 정의되는 기간

(주 2) 회계연도말 : 분배금 지급 시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결산기말

(주 3) 분배금 지급시기 : 분배가능한 이익초과분배금 및 이익 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

(주 4) 본 투자회사의 제 1 기 사업년도가 본 투자회사 설정 이전에 종료되므로, 배당은 2 기부터 수행됩니다.

(2) 본 투자회사는 매년 3 월 31 일, 6 월 30 일, 9 월 30 일, 12 월 31 일을 결산일로 하여 3 개월을 주기로 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3) (2)의 분배금의 지급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4) 본 투자회사가 (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 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5) 본 투자회사의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6)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은 본 투자회사에 귀속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주주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각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주주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3) 본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사항

- 본 투자회사의 경우 미국 Delaware州 법에 따라 설립된 KIP(Korea Investment Parallel LLC)이라는 회사를 통해 Parallel Petroleum LLC라는 회사의 지분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의거하여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동 외국납부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

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시행일 : 2011.10.26]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

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이를 바탕으로 본 투자회사의 세후 이익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지역	투자대상	항목	금액	비고
미국	LLC	총 법인세 차감전 이익	100.0	과세 대상 소득
		법인세액	-35.0	원천징수세율 35%
한국	본 투자회사	법인세 납부 후 이익	65.0	
		외국납부세액 환급	+14.0	법인세법 57조의2에 따라 14%한도로 환급
		세후 본 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79.0	

- 한편, 일반청약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5.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3억원 초과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한국투자신탁운용	107-81-85653	-	2만주	결격사유 없음

(주 1) 본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주당 발행가격을 1,000 원으로하여 10 만주를 발행하였으나, 2012 년 10 월 11 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당 발행가격을 5,000 원으로 변경하여 발기인 배정주수는 2 만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김용오	1969.09.27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現) 김용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해당없음	결격사유 없음
유은미	1984.03.25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해당없음	결격사유 없음

		現)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1) 본 투자회사가 설립후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최초의 법인이사,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법인이사 : 지급하지 아니함
- 감독이사 :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청산인의 보수 : 각 월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회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		
제2기		
제3기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주,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제1기								
제2기								
제3기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 주당 액면가액 (무액면인 경우 1주의 금액) : 5,000원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고
기명식	보통주	20,000주	1억원	무액면발행

(주 1) 본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주당 발행가격을 1,000 원으로하여 10 만주를 발행하였으나, 2012 년 10 월 11 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당 발행가격을 5,000 원으로 변경하여 발기인 배정주수는 2 만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본 투자회사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
투자회사					
비교지수					
수익률 변동성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	-	-	-
투자회사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본 투자회사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2.12.21 현재 /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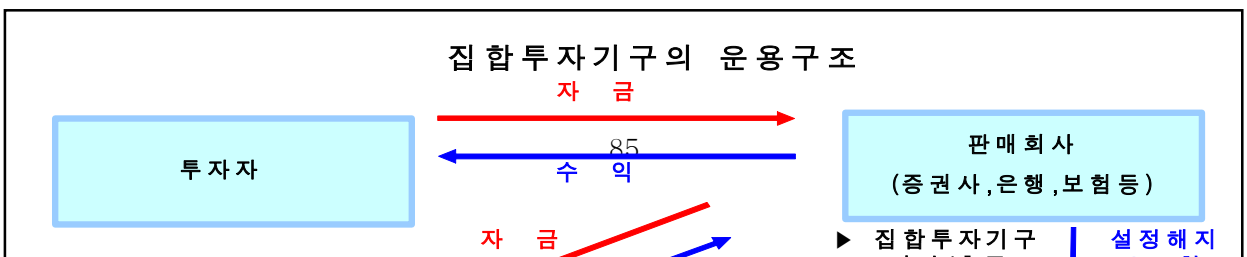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회사 연혁	2022.7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3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이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19.12.31. 현재 / 단위:억]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68,436	78,551	12,002	0	76,012	35,666	7,928	24,509	39,508	37,800	380,41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1) 회사 개요

회 사 명	RG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6층 (연락처 : 02-6670-1800, www.rgasset.co.kr)
회사 연혁	- 2008.7.11 설립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최초 자산운용사
자본금	85억
주요주주 현황	박용수(9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1. 해외 SPC인 KIP (본 투자회사가 100% 지분소유한 미국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관리업무
2. Parallel Petroleum LLC 및 Parallel Petroleum LLC 소유 자산의 관리업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인 KIP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전문 집합투자업자인 RG자산운용주식회사에 상기 업무중 일부를 위탁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수탁회사는 투자회사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투자회사 또는 본 투자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검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수탁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 및 전문성을 투자회사 존속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수탁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백업시스템 확보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업무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에 있습니다.
- 다만, 수탁회사가 법령위반, 본 계약의 위반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수탁업무의 수행에 있어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본 투자회사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수탁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회사가 수탁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성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또는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회사는 집합투자회사의 지시 또는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4) 기타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수탁회사에 지급합니다.

구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위탁업무 보수	0.05	정관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

(주 1) 상기 보수는 본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0.15(연간, %)에 포함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탁회사에 상기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수탁회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에 대한 공시는 본 증권신고서의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수시공시에 기재된 방법을 따릅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연락처 : 1566-2566, www.ib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식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23-9) (연락처 : 02-2180-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본 투자회사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본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 본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두며, 주주총회는 법령(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는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그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주주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이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이사회(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주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주주총회

- 투자회사의 이사회(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좌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는 연기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좌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

 가.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8.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정관의 변경 또는 투자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이사회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회사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투자회사 존속기간의 종료, 주주총회의 투자회사 해지 결의,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투자회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주주는 그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주주에 관련된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주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회사재산 명세서
 2. 주식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회사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주주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본 투자회사의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본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본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회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회사를 해산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의 설정 현황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현황과 주식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4.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회사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회사의 자산·부채 및 주식의 기준가격
 가.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사업년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회사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회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회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회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회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회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회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하여 투자회사의 사업년도 종료,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종료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주주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	-	-	-	-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 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 내역입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첨]

[별첨1-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및 특약]

구분	내용

EOD(Event of Default)발생 시 투자원금 회수 관련	- 기본적으로,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손실 보상 - 단, 보험사고 통지일까지의 원유 생산량이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한 원유량(예상 생산량의 50% 수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헤지(Hedge) 계약 정산일별로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한 원유량보다 실제 원유 생산량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손익은 보험금 산정 손실액에서 제외 - 보험금액(손실보상액)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투자상대방간 투자계약서상 통화로 하며, 본 투자회사의 경우 삼성물산측과의 지분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가 미국 달러화(USD)로 체결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간 환율에 따른 변동은 손실보상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음
기타	- 보험사고 통지일을 기준으로 본 투자회사가 미정산한 헤지(Hedge) 계약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 7조에 의해 동 금액은 투자대상사업으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간주 - 보험사고 통지일을 기준으로 미정산한 헤지(Hedge) 계약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손실액 산정시 이를 가산하지 않음

이로 인해, 본 투자회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을 통한 투자원금 일부 보전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내용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제 7 조(손실액) 제4조의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본손실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손실액으로 합니다.

기본손실액= 취득원금 - (기배당금액의 합계 + 주식등 매각금액)

주1) 취득원금: 제20조에 의거 집행통지된 자금의 총합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책임부담금
2. 보험금지급전에 회수한 금액
3. 당해 위험발생으로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헤지(Hedge)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의한 취득금 포함)
4. 제 11 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6. 공사가 보상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제 9 조(보험금의 지급거절 등)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8조의 보험책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험금수취권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에 의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투자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나.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투자계약 또는 위험담보장치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한 경우

다. 투자계약과 관련된 해당국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알린 경우

4.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에 기재하였거나 공사가 인수조건으로 제시한 위험담보장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적효력이 없거나 상실된 경우

5.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제4조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주식등 취득과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다만, 보험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에 한함)한 경우

8. 제13조에 규정한 투자의 실행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한 경우

9. 제14조에 규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경우

10. 제21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해지권은 공사가 그 해지의 원인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 19 조(보험가액, 인수가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인수가액,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투자상대방간 투자계약서상의 통화로 합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특약(안) - 특약은 보험료 납부시 확정 예정>

1. 보험금 수취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보험투자상대방이 차입 혹은 담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피보험투자상대방이 PLL Holdings LLC("모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Working Interest 및 기타자산의 61%("61%지분")에 대하여 담보가 실행되는 경우, (가) 나머지 Working Interest 및 기타자산의 39%("39%지분")에는 이러한 담보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나) 모회사의 피보험투자상대방에 대한 지분도 담보가 실행되는 61% 지분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소멸되어야 한다. 39%의 지분이 위 담보권 실행으로 감소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혹은 (나)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회사의 지분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은 실효되며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4. 보험계약자가 피보험투자상대방이 생산하는 원유와 관련하여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거래(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며, 이하 "헷지계약") 등 기타 중요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해당 거래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헷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제 7 조의 손실액(이하 "손실액")은 동 헷지계약으로 인한 손익을 반영(헷지이익은 손실액에서 차감하고 헷지손실은 손실액에 가산함)하여 산정한다.

6. 보험계약자는 헷지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가)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한 결과 보험금청구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 질권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 및 질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전에 당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 공사는 질권설정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다) 제 3 자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보험금청구권의 귀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 공사는 보험금을 공탁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고, (라) 공사의 통지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며, (마)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계약에 따라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바)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계약에 따른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사) 기타 공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취권자 및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7. 보험계약자는 헷지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39%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본항의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 전에 담보권 실행 예정사실 및 그 대상 지분의 수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지분이 담보권 실행으로 제 3 자에게 전부 처분되는 경우 보험은 실효되고 보험료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만약,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지분의 일부만 처분되는 경우, 보험은 해당 담보권 실행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유하는 잔여 지분(이하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처분된 지분과 관련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으며, 공사는 잔여지분과 관련하여 보험금액 등 보험조건(이하"변경 보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보험조건은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변경 보험조건을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후 30 일의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취권자(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변경 보험조건에 동의하는 서면(이하 "동의서")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되며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8.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이전에 39%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하여야 한다.

9.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또는 39%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보험계약의 내용과 투자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별첨2-공동운영계약서(Joint Operating Agreement) - 전체 Field의 예시이며, 타 Field도 유사계약]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 Field	Fullerton 광구
계약 당사자	- 운영권자 : TEXLAND PETROLEUM, INC. 비운영권자 : Parallel Petroleum LLC 외 6개사
계약 체결일	2003년 1월 1일
주요내용	<제3조 당사자간 지분율> A. Oil and Gas Interest - Oil and Gas Interest를 소유한 자는 Oil and Gas Lease에 대한 본 계약 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Royalty Interest 및 임차인의 Interest 둘 다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B. 생산물과 비용에 대한 부담 Interest - 모든 부채와 비용은 Interest에 따라 각각 부담하고, 생산물에 대해서는 Royalty 지급액과 다른 추가적인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후 소유 - 특정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비용 등을 부담할 경우 이러한 초과 부담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에 청구 가능 <제4조 Title 확인> A. Tile 실사 - Title 실사는 시추하는 광구에 대해서 Working Interest, Minerals, Royalty, Overriding Royalty, Production Payment를 확인 - Title 실사 완료 전, 변호사의 확인 전 또는 모든 시추 관련 당사자간의 확인 전에 시추할 수 없음 B. Title 실사에 따른 실패 및 손실 - 손실 발생이 Interest의 비율대로 각 당사자간 부담 <제5조 운영권자> - 운영권자는 비운영권자에게 서명으로 통지 후 사임 가능하며, 비운영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권자의 해임이 가능 - 2인 이상의 당사자의 과반수 Interest의 찬성으로 후속 운영권자 선정 - 운영에 따른 직원 및 하청업체는 운영권자가 결정 - 운영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함 1. 광구의 시추 시 경쟁 입찰 요율을 근거로 좋은 조건의 요율로 계약, 운영권자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조건의 요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운영상의 발생 비용은 운영권자자 부담하고 interest 비율에 따라 각각의 당사자에게 청구 3. 유치권이나 담보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이나 부채의 지급 4. 비운영권자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관리하고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 5. 비운영권자는 현장에 대한 방문 및 운영과 관련된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 6. 정부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 운영권자가 제출하고 비운영권자에게 사본을 즉시 제공 7. 비운영권자에게 시추 시에 통지, 시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Oil and Gas를 생산 가능한 추정되는 모든 장소를 시험하고 결과를 통지 <제6조 시추와 개발> A. 광구에 대한 시추(Rework, Sidetrack, Deepen, Recomplete, Plug Back 등)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통지 받은 당사자들은 20일 이내에 Cost 부담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함 B. 광구의 생산 전 준비가 완료되더라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광구의 Drilling, Deepening, Sidetracking, Testing 을 할 수 없음. 당사자들은 광구의 Drilling, Deepening, Sidetracking, Testing, Completing, Equipping 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거나, 광구를 일정 깊이까지 시추 후 운영권자가 비운영권자에게 생산 전 준비 완료를 즉시 알려주고 참여 여부 확인 후 광구의 Drilling, Deepening, Sidetracking, Testing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C. 운영권자는 특정 프로젝트의 광구의 시추와 관련된 비용이 $25,000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착수하지 않음. 단, 예외적으로 화재, 홍수 등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각 당사자에게 즉시 보고 운영권자가 각 당사자가 준비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때는 비운영권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10,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특정 당사자가 운영권자에게 수리, 보조 생산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각 당사자의 66.67%가 찬성하면 해당 제안에 참여하는 권리가 생기고 비용도 지분율 대로 부담 E. 시추 후 Dry Hole에 대한 복구(Plug, Abandon)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복구할 수 없음. 운영권자가 복구를 위해 48시간(공휴일, 주말 제외) 이내에 각 당사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복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생산이 완료된 광구의 경우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복구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모든 당사자가 부담함. 복구 의사전달 후 30일 이내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되며, 의사전달 후 30일 이내 복구에 모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운영은 지속되며 지정된 기간의 만기까지 생산이 재개하여 광구의 인수를 진행해야 함. 광구에 대한 복구는 모든 당사자들이 복구에 대한 통지를 받고 제6조 E항에 따라 광구의 인수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까지 영구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음. F. 광구의 시추(Drilling, Reworking, Sidetracking, Plugging Back, Deepening, Testing, Completion, Plugging)과 관련 해당 운영 비용을 75%를 부담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운영은 종료될 수 없음. G. 생산과정에서의 손실, 마케팅이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Oil and Gas의 지분비율대로 각각의 당사자가 수취함. 생산된 Oil을 지분비율 대로 수취 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운영권자는 Oil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단, Pipeline 과 분리하여 가스를 처분할 때 전체 가스 매출액이 각각의 지분비율과 동일하지 않으면 각각 당사자 사이의 계산은 Gas Balancing Agreement에 따름 <제7조 각 당사자의 부채와 비용> A. 발생 비용과 관련채무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별 Interest에 따라 부담

	B.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지분율 만큼 Oil & Gas Lease와 Interest를 저당권 설정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 C. 운영권자는 각 당사자들에게 익월의 예상 운영비만큼 선급금 요청 가능 D. 특정 당사자가 Default가 발생할 경우 Defalut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efault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Default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는 중지됨 E. 임대료, 광구 폐쇄비용, 최소로열티 비용은 각 당사자 별로 부담 F. 운영권자는 법률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비운영권자는 자신의 Oil and Gas Interest에 발생한 조세부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권자는 세금 납부 후 지분율로 각 당사자에게 청구 <제8조 Interest에 대한 취득, 유지 또는 양도> A. Lease에 대한 포기 - Lease가 계약된 지역의 땅을 매입한 이상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음 - 특정 당사자가 Interest를 넘기고자 하면 다른 당사자에 서면 통지하여 동의 요청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Interest를 할당함 - 할당받은 자는 할당한 자에게 잔존가액을 지급 B. Lease의 갱신 또는 확장 - Lease 또는 Interest가 갱신 또는 확장될 경우 다른 당사자는 대체되기 전에 통지 받아야 하며, 갱신 또는 대체된 Lease에 대한 소유권에 참여할 수 있음 C. 현금 또는 토지 출자 - 광구를 시추할 경우 현금 또는 토자 출자금은 시추를 수행한 당사자에 지급 D. 지분에 대한 동일한 계약 유지 - 모든 매각, 이전, 처분, 담보설정은 본 계약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함. Oil and Gas Lease에 대한 Interest를 인수하는 자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본 계약의 당사자로 간주 E. 권리의 분할에 대한 면제 - 주 법에 의해서 허가된다면 당사자가 소유한 분할 불가능한 Interest에 대해서는 권리를 분할하는 것을 면제함

[별첨3-1 유한책임회사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 목적	PARALLEL유전지분을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Parallel

	Petroleum LLC)의 유한책임사원 PLL Holdings LLC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90% 출자자, Ankor E&P Holdings 10% 출자자)와 유한책임사원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 (본건 투자회사의100% 자회사), 사이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계약서로 '13년 1월말 체결 예정임
계약 당사자	- PLL Holdings LLC(Parallel Petroleum LLC 61% 출자자) -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 (유한책임회사의 39% 출자하는 새로운 유한책임사원)
주요내용	<제3조 운영> 1. 이사회의 권한 - 이사회와 이사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부여 받음. - 이사회와 이사의 의사결정과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과 행위로 간주되며, 회사와 각각의 사원에게 귀속됨 - 어떠한 이사도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행위를 할 권한은 가지지 않음 2. 이사의 임명 및 수 - 이사회는 9명의 자연인으로 구성하되, 6명은 PLL Holdings LLC(5명은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에서 임명, 1명은 Ankor E&P Holdings 에서 임명) 임명하고, 1명은 Parallel Petroleum LLC, 2명은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에서 임명하되, 이중 KIP LLC에서 1명을 구성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명을 구성함. 3. 이사회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PLL Holdings LLC가 임명함. 4. 이사의 재임기간 - 이사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하기 항목 중 가장 빠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사 직무 수행 (i) 이사가 사망, 무능(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이 계약의 조건을 수행 불가할 경우 (ii) 이사가 자신을 임명한 사원에게 통보 후 사임하는 경우 (iii) 이사를 임명한 사원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 이사는 이사를 임명한 참여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 해임 가능 - 이사의 사임, 해고, 사망 또는 무능(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으로 인해 발생된 공석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사를 선임한 사원이 즉시 자연인으로 임명 5. 이사회 a.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주최. b. 이사회의 특별회의는 3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함. 회의에 대한 공지는 회의 전 5 영업일 이전에 각각의 이사에게 공지

	- 공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i) 시기, 날짜, 장소(모든 이사의 별도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회사의 본사로 함) 및 회의를 실시하는 방법 (ii) 제안안건과 회의의 목적, 이사회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와 문서 c. 이사회의 정족수는 최소한 이사 5명 이상의 참석 -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단, 계약서 Section5의 h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KIP LLC 선임이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 - 각각의 이사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짐. g. 다음의 행위는 Section 5의 c항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1) 특정 금액(회사 총자산의 0~33.3%이하의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자산 매각, 폐기, 양도2) 회사의 자산에 차입이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3) 회계정책을 변경, 신규 채택할 경우 4) 예산에 대한 수정 및 적용 5)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여 부채 차입하는 경우 6) 사원에 대한 정기 배당 7)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결정이나 예산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9) 회사의 임원에 대해 임명, 고용, 해고, 대체, 복무규정을 결정하는 경우 10) 위의 사항들을 제외한 기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2), 5), 8) 조항의 담보, 차입, 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Section C에 따른 PLL Holdings에 의한 대출 또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IP LLC 이사의 승인이 필요함. 그러나, 상호 합의된 담보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실행가능 h. 다음의 행위는 Section 5의 c항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및 KIP 이사 두명모두의 동의 필요 1) 총자산의 33.3%를 초과하는 자산 매각 2) CAPEX, OPEX, G&A Cost(일반관리비)를 승인된 예산의 33.3%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다른 인격과 합병 계약을 맺거나, 다른 형태의 인격으로 전환하는 경우 4) 회사의 해산 5) 회사의 청산신청 제출, 개편, 연방 파산법이나 다른 미국법에 의한 감면이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6) 회사의 Limited Liability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7) 사원에 대한 중간 배당

	8) 증자, 감자 및 주식매입선택권, 전환사채 등의 발행 9) 세금 목적을 위한 거래의 배분이나 금전적인 지출이 수반되는 세금의 선택을 변경하거나 결정하는 사항 10)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7. 연도별 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전 15일 전에 CAPEX, OPEX, G&A Cost(일반관리비), 현금흐름의 예측, 차입과 관련한 준수사항, 수익과 비용에 대한 예측 에 대한 연간, 월간 예산을 준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제5조 자본 출자와 비용> A. 최초 자본 출자 사원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출자 B. 추가 자본 출자와 비용 - 이사회는 각 사원에게 지분비율대로 추가 자본출자(Additional Capital Contributions)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이사회 지정일까지 납입되어야 함 - KIP는 Parallel Petroleum LLC로부터 분배받는 원금과 배당금 기준 분배율이 [12]%를 초과하여 충분한 유보금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출자를 거절할 수 없음 C. PLL Holdings LLC의 의한 대출 추가 자본출자가 KIP LLC이사에 의해 부결되거나, KIP이 추가 자본출자에 충분한 재원이 없어 추가 자본출자에 응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 PLL Holdings LLC는 회사 에 대출할 수 있음 D. 출자금의 반환 - 사원은 본 계약 규정 외에 출자금 및 잉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은 회사나 다른 사원의 부채가 아님 - 사원은 회사가 특정 사원의 출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자산의 대여 및 출자를 요청받지 않음 E. 자본 계좌 자본 계좌는 각 사원마다 설립되고 유지됨. 각 사원의 계좌는 아래 사항에 의해 증가함 (1) 사원이 회사에 낸 현금 출자 금액 (2) 사원이 회사에 현물 출자에 대한 동의한 가치 (3) 재무부 규정 1.704-1(b)(4)(i)에 기술된 소득과 이익을 제외하고 1.704-1(b)(2)(iv)(g) 조에 기술된 면세를 포함하여 회사 사원 소득과 이득의 할당

	각 사원의 계좌는 아래 항목에 의해서 감소함 (4) 회사가 사원들에게 한 현금 배당 (5) 회사가 사원들에게 한 현물 배당 (6) 705 (a)(2)(B) 조에서 기술된 회사의 지출에 대한 사원들의 할당 (7) 재무부 규정 1.704-1 (b)(2)(iv)(g)에 기술된 것들을 포함한 회사의 손실이나 공제의 할당. 그러나 재무부 규정 1.704-1 (b)(4)(i) 나 1.704-1 (b)(4)(iii)에 기술된 손실이나 공제는 (7)에서 제외. 사원의 자본 계좌는 재무부 규정 1.704-1 (b)(2)(iv) 나 1.704-1 (b)(4)(iii)에 기술된 바에 따라 허가되고, 그리고 재무부 규정 1.704-1 (b)(2)(iv) 과 1.704-1 (b)(4) 조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조정됨. 여기에는 멤버 자본 계좌의 가치를 반영한 자산이 조정되고, 그 조정은 재무부 규정 1.704-1 (b)(2)(iv)(g) 에 의한 각각에 해당되는 세금을 배분하기 보다는 감가상각, 소모, 할부상환, 장부에 계상된 이득과 손실을 반영함. F. 일반관리비(G&A Cost) - G&A Cost는 효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부담 - KIP LLC가 지분에 근거한 회사의 Working Interest를 매각 시 인수자가 G&A Cost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PLL Holdings LLC는 동의 <제7조 출자지분의 처분> A. 양도 - 본 계약상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및 다른 사원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양도 가능 - 본 계약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5년간은 KIP LL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삼성물산㈜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매각, 이전 등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KIP LLC가 지분 및 이에 근거한 회사의 Working Interest를 매각 시 이와 관련된 계약의 위배하지 않고 회사나 다른 사원에게 지나친 재무적 부담을 주지 않는 한 회사는 매각에 협조하며, KIP LLC가 출자지분 매각대금을 즉시 지급함 - 사원인 KIP LLC 및 PLL Holdings LLC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제공한 회사의 Working Interest를 처분할 경우 해당 Working Interest의 비율에 따른 각 사원의 출자지분은 소멸하고, 각 사원은 출자지분의 소멸될 수 있도록 동의하고 협조함 - KIP LLC와 PLL Holdings LLC는 제7조 G항에 따라 회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함. B. 동반매도청구권 - 처음 5년간 PLL Holdings LLC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이 50% 미만이 될 경우 PLL

	Holdings LLC는 KIP LLC에 매각 거래 완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매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5년 이후에는 PLL Holdings LLC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PLL Holdings LLC는 KIP LLC에 매각 거래 완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매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반매도에 대한 통지 시 인수자, 매각가격, 매각일자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기재하여 통지 - KIP LLC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PLL Holdings LLC에 대하여 PLL Holdings LLC가 매각하는 지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KIP LLC 보유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반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C. 출자지분의 담보 또는 저당권 - 사원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출자지분을 담보 제공하거나 저당권 설정에 제공할 수 없음. 단, 상호 합의한 담보설정 사항은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D. 우선매수청구권 - 특정 사원이 지분을 매각 시 다른 사원은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권 보유 - 매각 통지 후 90일 이내 매수여부 결정, 서면으로 매수승낙서 전달 후 30일 이내에 지분매수하며, 매각 통지 후 90일 이내 매수승낙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매수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 - 매수승낙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매각자는 6개월 동안 지분에 대해서 매각통지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리고 매각통지의 조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매각이 가능 E. 승인없이 양도한 사원지분에 대한 회사의 매수청구권 - 법원의 결정, 부담명령, 혹은 이사회 미승인 상태에서 사원지분이 양도된 경우, 회사는 양도지분(전부/일부)을 인수할 옵션을 보유 1. 지분 양도를 인지 후 90일 이내에 양수자에 지분 인수의사를 서면 통지 2. 지분인수가액 산정기준일은 통지가 이루어진 다음달 초일 혹은 지분 양도일 중 낮은 공정가액이 산출되는 날로 정함 3. 지분매수가격은 회사와 지분양수자가 합의한 공정가치를 적용하되, 매수의사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Section E에 규정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적용 4. 지분매수는 공정가치 최종결정일의 다음달 첫번째 화요일 오전 10시 회사 본사에서 완료 - 미승인 지분 양수자 및 지분을 양도한 사원 모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자로 간주 E. 공정가치

	- 회사가 인수할 지분의 공정가치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요청하며,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은 회사 및 분쟁 상대방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짐. - 감정평가사의 평가 요청자료는 평가요청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사는 평가요청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비용은 회사 및 분쟁 상대방이 절반씩 부담 G. 담보제공한 사원의 지분 제7조의 Section A 및 Section F에 따라 사원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담보, 질권 등과 관련한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사원의 지분이 처분될 경우에는 제6조의 Subsection A(2), Section B, C, D와 E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6조의 Section C의 행사에 따라 사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사원이 됨 <제7조 분배와 할당> A. 정기 분배 - i) 이사회가 결정한 경비, 부채, 운전자본 등의 필요금액의 현금 ii)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계약 및 법상 요건 충족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합리적으로 보유 현금규모를 결정하여 누적적으로 i), ii)를 초과하는 금액(Excess Cash)은 매 분기 후 60일 이내에 각 사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 제5조 (c)에 따라 다른 사원이 회사에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금이 상환될 때 까지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음. B. 중간 분배 - 사원의 요청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 C. 사원의 사임 특정 사원이 사임할 경우 회사의 해산, 청산 시 분배금이나 청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함 D. 할당 - 조세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계, 세무목적의 각 항목(소득, 이익, 손실, 공제/잔고)은 분배비율에 따라 사원들에게 할당 E. 지분의 변동 - 사원지분 변동 시 소득, 이익, 손실, 공제/잔고 등의 항목은 사업연도 내 실적이나 현금분배 시점 등에 관계없이 지분 양도, 양수자간 단순 지분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 할당은 재무부 규정(the Code and the Treasury Regulation) 706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F. 담보권 실행에 대한 지분 반환

	- 회사는 사원들의 차입 및 헤지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제공 자산이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될 경우 이는 담보실행으로 처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지분에 대한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며, 채무불이행 사원이 보유한 출자지분은 자동으로 소멸함 - 매각에 따른 공정가치는 사원들의 동의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인이 적정한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인은 30일 이내에 공정가치 산정하여 통보 -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은 채무불이행 사원과 다른 사원이 동일하게 부담 - 지분 반환이 발생하여 원천세나 기타세금이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원은 회사에 해당 세금을 지급하여야 함 G. 대리권 - 회사는 제7조 F항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각각의 사원으로부터 위임받음 H. 담보권 실행에 따른 우선매수권 - 특정 사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채무불이행 사원은 다른 사원들에게 담보권 실행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자산의 잠재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연체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사원 이외의 다른 사원 45일 이내에 매수제안을 수락하고 채무불이행 사원의 출자지분을 매수한다고 통지 - 매각 완료 후 채무불이행 사원은 매각대금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사원이 채무불이행 사원의 채권자에게 직접 매각대금 지급 - 매각에 따른 공정가치는 사원들의 동의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인이 적정한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인은 30일 이내에 공정가치 산정하여 통보 -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은 채무불이행 사원과 다른 사원이 동일하게 부담

[별첨3-2 매매계약서(Purchase and Sale Agreement)]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 목적	PARALLEL유전지분을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Parallel Petroleum LLC)의 유한책임사원 PLL Holdings LLC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90% 출자자, Ankor E&P Holdings 10% 출자자)가 보유한 지분 중 39.0%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로 '12년 12월말에 체결 예정임
계약 당사자	- PLL Holdings LLC - Korea Investment Parallel LLC
매각금액	인수 기준금액 USD 301,649,400, 이자비용 분담액 USD 6,057,109 (2011년 12월 29일부터

<table>
<tr><td></td><td>2012년 12월 27일까지 산정한 금액임)</td></tr>
<tr><td>거래 종결일 및 장소</td><td>- 거래종결일 : 2013년 1월 31일 오전 10시(미국 중부 표준시)
- 거래종결장소 : 5847 San Felipe Street, Suite No.1500, Houston, Texas 77057</td></tr>
<tr><td>거래 선행조건 (Pre-Closing Transactions)</td><td>- 매도자측 선행조건
A. 비생산자산의 이전
(a) 매도자의 100% 소유 자회사 설립
(b) Exhibit B에 기술한 비생산, 탐사자산 전부를 자회사로 출자
(c) 회사의 사원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분배
B. 매도자는 회사자산의 6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하여 회사의 자산이 담보해제 될 수 있도록 함</td></tr>
<tr><td>거래 종결조건 Conditions to Closing</td><td>- 종결 조건
<table>
<tr><th>매도자측 종결조건</th><th>KIP측 종결조건</th></tr>
<tr><td>(a) 진술 :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이 없는 계약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rticle 6에 기술된 매도자 진술/보증 조항 상 모든 사항이 계약일로부터 종결일까지 진실, 정확해야 함.
(b) 준수사항 : 매수자는 거래 종결일까지 본 건계약에 의한 모든 약정 및 협약사항을 이행 및 준수해야 함.
(c) No Action : 거래종료일까지 거래완성을 금지, 제한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명령, 지시, 부과가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으며, 본건 거래 완성을 제한, 중지시키거나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제3자(정부기관을 포함 에 의해 제기되거나 정부기관 및 중재기관 앞 계류 중인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가 없어야 함.
(d) 정부 승인 : 대상지분을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정부기관 동의/승인사항 중 관행상 사후적으로 발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동의/승인을 이미 득하였거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였거나 필</td><td>(a) 진술 :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이 없는 계약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기술된 매도자의 진술/보증 조항 상 모든 사항이 계약일로부터 종결일까지 진실, 정확해야 함.
(b) 준수사항 : 매도자는 거래 종결일까지 본 건계약에 의한 모든 약정 및 협약사항을 이행 및 준수해야함.
(c) No Action : 거래종료일까지 거래완성을 금지, 제한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명령, 지시, 부과가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으며, 본건 거래 완성을 제한, 중지시키거나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제3자(정부기관을 포함) 에 의해 제기되고 정부기관 및 중재기관 앞 계류 중인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가 없어야 함.
(d) 정부 승인 : 대상지분을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정부기관 동의/승인사항 중 관행상 사후적으로 발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동의/승인을 이미 득하였거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였거나, 필</td></tr>
</table></td></tr>
</table>

요기간 조기종료를 승인받아야 함. (e) 거래 선행조건 : 자산이전에 대한 Ankor의 동의, 매수자 구성 거래 및 Refinancing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거래가 완료되어야 함. (f) Hedge Novation :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헤지(Hedge)계약은 종결되거나 매도자에게 이전, 대체되어 회사의 모든 의무는 매도자에게 이전되어야 함. 거래 종결 시점에 회사에는 어떠한 헤지(Hedge) 계약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함.	요기간 조기종료를 승인받아야 함. (e) 거래 선행조건 : 매수자 구성 거래 및 Refinancing에 대한 Ankor의 동의가 얻어지고, 각 거래가 완료되어야 함.

- 거래 종결 시 의무

매도자측 거래종결 시 의무	KIP측 거래종결 시 의무
거래종결 시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하여 매수자의 거래종결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매도자는 다음사항을 전달함 (a) 매수자에게 지분에 대한 Exhibit D에서 사원 지분에 대한 할당과 매수자에 대한 이전을 보증하는 Certificate 전달 (b) Escrow Agent에게 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의 Ecrow를 매도자에게 풀어주는 Joint Instruction Letter 전달 (c) 매수자에게 거래종결 일자에 매도자의 법률 담당 직원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Certificate를 전달, (i) 매도자를 위해서 완전한 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하며 (A)매도자의 LLC Agreement와 Certificate, (B) 매도자의 이사회 의사록, (C) 매도자 이사회의 승인을 전달하고 (ii) 본 계약의 실행을 위한 본 계약 및 Certificate 등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재임기간의 확인 (d) 매수자에게 거래종결 일자에 매도자의 법률 담당 직원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Certificate를 전달, (A) 회사의 LLC	거래종결 시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하여 매도자의 거래종결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매수자는 다음사항을 전달함 (a) 매도자에게 즉시 가용자금으로 매도자가 지정한 계좌에 매각대금 송금 (b) Escrow Agent에게 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의 Ecrow를 매도자에게 풀어주는 Joint Instruction Letter 전달 (c) 매도자에게 거래종결 일자에 Section 7.1(a) 와 (b)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확인하고 매수자의 승인권자에 의한 Certificate 전달 (d) 매도자에게 거래종결 일자에 매도자의 법률 담당 직원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Certificate를 전달, (i) 매수자를 위해서 완전한 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하며 (A) 법인, 내규, LP Agreement, 매수자의 조직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Certificate, (B) 매수자의 이사회 의사록, (C) 매수자의 파트너, Unit Holder, 주주의 승인, (ii) 본 계약의 실행을 위한 본 계약 및 Certificate 등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재

	Agreement 및 Certificate, (B) 필요하다면 본 계약을 위한 회사 사원의 승인 (e)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법률 Treasury Regulation § 1.1445-2(b)(2) 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라는 확인서 전달 (f) 매수자에게 Section 6.1에 따른 문서에 따라 매도자에 의해 받는 승인을 전달 (g) 매수자에게 매수자가 요구하는 본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전달	임기간의 확인 (e) 매도자에게 Section 6.1에 따른 문서에 따라 매수자 의해 받는 승인을 전달 (f) 매도자에게 매수자의 승인권자에 의해 실행된 매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의 매도자의 LLC Agreement 전달 (g) 매도자에게 매각자가 요구하는 본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전달
해지	- 요건 (a)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상호간의 사전서면동의 (b) 매수자나 매도자에 의해 당사자의 부주의나 의도적으로 계약서나 Covenants를 준수하는데 실패하여 2013년 2월 28일 전에 거래종결이 되지 않은 때에 이 (c)항에 의해 어떠한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효과 제9조 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법적 효력 등이 없으며(비밀 유지계약 및 제4조 4항, 제5조 2항, 제6조 2항, 제9조, 제11조, Appendix of Definitions는 예외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 매도자는 즉시 지분에 대한 매각, 이전, 저당설정 등과 관련된 모든 소유권을 본 계약상의 제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음 - 손해 (a) 각 당사자가 제9조 1항 (b)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리고 일방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Covenants와 계약 이행을 못하는 경우, 중요한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지당하는 당사자는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가 아닌 실제 손해를 매각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자격이 있음	
배상	- 배상 (a) 거래 종결부터 그 이후로, 매수자는 다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로부터 매도자 그룹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며, 매도자 그룹을 보호, 방어해야 함 (i) 제6조에 포함된 계약을 매수자가 위반, 또는 그로 인한 결과로부터 발생한 경우 (ii) 제5조, 제8조 3항에 의한 거래 종결시 매수자에 의한 Certificate의 전달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 또는 그로 인한 결과로부터 발생한 경우 매도자 그룹의 부주의, 법적책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매도자 그룹의 중과실,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확대할 수 없음. 단, 제10조 1항 (b)에서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손해보증하는 손해는 제외 (b) 거래 종결부터 그 이후로, 매도자는 다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로부터 매수자	

	그룹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매수자 그룹을 보호, 방어해야 함 (i) 제6조에 포함된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 또는 그로인한 결과로부터 발생한 경우 (ii) 제4조, 제8조 2항 (c)에 의한 거래 종결시 매수자에 의한 Certificate의 전달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 또는 그로 인한 결과로부터 발생한 경우 매수자 그룹의 부주의, 법적책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매수자 그룹의 중과실, 미필적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확대할 수 없음. 단, 제10조 1항 (a)의 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손해보증하는 손해는 제외 (c) 본 계약에서 표현한 것, Interest의 매수 및 매각 등을 제외한 다른 치유방법은 제10조에서 명확하게 언급한 보상의 제한된 권리를 따름 (d) 제10조 1항에 주어진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은 매도자 그룹 및 매수자 그룹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다만 제10조 1항의 배상의 권리는 Person이 반드시 당사자에 의해 집행되거나 법적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정 - 배상청구 (a) (i) "Indemnifying Person" 용어는 특정한 손해와 관계되어 있을 때, 제10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타인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지는 인격을 의미 (ii) "Indemnified Person" 용어는 특정한 손해와 관계되어 있을 때, 제10조에 따라 특정 손해에 대하여 타인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인격을 의미 (b) 제10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Indemnified Person은 Indemnifying Person에게 제10조 2항에 대하여 "Claim Notice"를 알려야 함. Indemnified Person에 대해 제3의 당사자의 권리를 근거로 배상이 발생할 경우("Third Party Claim"), Indemnified Person은 제3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Claim Notice를 제공해야 함. (c) Third Party Claim에 근거로 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Indemnifying Person은 Indemnified Person에게 알렸다는 Claim Notice 수령증을 15일 내에 받아야 함 (d) 만약 Indemnifying Person은 본인의 책임을 승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ndemnifying Person은 상기 옹호와 절차를 위해 타협 또는 화해 등을 포함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야 함. Indemnifying Person의 요구에 의해 Indemnified Person이 동의 하에 어떠한 제3자 손해보상의 선택해야 함. Indemnified Person은 자체 발생 비용은 제10조 2항 (d)에 근거하에 Indemnifying Person의 관리하에 부담함. Indemnifying Person은 Indemnified Person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손해배상을 결제해서는 아니됨. 또한 (i) Indemnified Person의 의무에 대한 최종판결에 근거하거나 (ii) Indemnified Person을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손해배상을 결제해서는 아니됨. (e) Indemnifying Person이 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Third Party claim을 정산, 방어를 제대로 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Indemnified Person Third Party Claim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f) Third Party Claim에 근거하지 않은 배상이 발생한 경우, Indemnifying Person은 30일내로 Claim Notice 수령증을 30일 내에 받아야 함. Claim Notice에는 (i) 손해에 대한 해결, (ii) 손

	해보상을 제공할 의무에 대한 인정, (iii) 손해배상 권리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포함됨. - 청구의 제한 (a) 적용가능한 제6조 2항의 약정/협약사항이 무기한으로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가능한 제4조, 제5조의 당사자 진술/보장사항 및 제6조의 약정/협약사항 그리고 거래종결시 제8조 2항 (c)와 제8조 3조 (c)에 따라 발행되는 Certificate상 관련 진술/보장사항은 거래 종료 이후 2012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함. (만약 적용 가능 조항에서 더욱 짧거나 긴 기간을 적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건 계약의 남은 부분은 다른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 만기까지 존속함. 거래종료 이전에 진술/보장/약정/협약 사항에 대한 본건계약에 따른 선의의 청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강제력 및 영향력이 없음. (b) 제10조 1항 (a), (b), (b) (i), (b) (ii)은 보상에 대한 특정 서면 주장을 종료 일자 이전에 배상을 약속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표현, 보증, 준수사항, 동의를 반영한 계약의 종료 날짜에 종료. (c) 매도자는 다음의 경우 제10조 1항 (b) (i) 혹은 (b) (ii)에 따른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음: (A) 매수자 손실배상요청의 개별적인 배상책임금액이 $5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최소 배상액) 및 (B) 최소배상금액에 따라 배상책임자가 공제가능 배상액을 초과하고 $3,900,000(책임금액)에 미달하는 총손해금액까지만 책임이 있을 때, 매수자 손실배상요청의 총 금액이 $2,000,000까지 이거나 넘지 않는 경우(공제가능 배상액) (d) 매도자는 제10조 1항 (b)에 따라 매수자에게 책임금액을 초과하는 총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받지 않음. (e) 제10조에 따라 배상을 받을 손해자의 손해의 배상액은 (i) 손해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 실제 수령받는 금액과 (ii) 손해자가 실제로 받는 순 세금효과와 동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f)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자가 동일한 손해, 부채, 손실, 비용, 주장 등에 대해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상으로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g) 매수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i) 2011년 12월 30일 전에 회사의 자산, 회사의 운영, 지분율, (ii) 2011년 11월 29일에 체결된 PLL Holdings LLC와 삼성, ANKOR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문제임. 매수자에 대한 배상은 삼성이 수령한 43⅓%와 동등한 현금 지급이 될 것이며, 2011 PSA및 부수문서에 따르는데, 그 금액은 30일 안에 삼성의 채무가 되고, 삼성은 그 배상청구금액을 수령함. 본 계약에는 삼성에게 2011 PSA에 따라서 배상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삼성이 배상권을 추구하거나 포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매수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없음. - 배타적 치유 당사자들은 본건 대상지분의 양수, 양도와 관련한 권리, 책임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전적으로 본건계약에 정해진 조항에 따른 거래에 의할 것임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본건계약

	에 적시되지 아니한 어떠한 의무사항이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책임 지지 않음. 또한 당사자들은 본건 계약이 공정한 교섭에 의해 복잡한 당사자간 관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반영하여 성립하였음을 인정함. 당사자들은 어떠한 한쪽 당사자 및 관계사도 상대방 당사자 및 개인과 일반적 매수/매도자간 공정거래를 넘어서는 기대를 정당화하는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함. 본건계약 조항(본건계약과 관련되거나 본건계약을 유발하는 본건계약상 진술/보증사항 포함)에 대한 위반이나 대상지분 매매와 관련되거나 유발되는 어떠한 청구, 유발 행위에 대한 유일하고 독점적인 치유방안은 법상 가능하거나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형평에 부합해야 함.
준거법	미국 텍사스州 법

[별첨4-현금흐름 및 수익률 산출 내역]

가) 주요가정

구분	내용
평가기준일	2013년 1월 1일
평가기간	201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입기준일	2013년 1월 1일
생산량	-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Inc. 매장량 평가보고서 (평가기준일:2012년6월30일) 기준 - 기술적 실현가능성 고려: Proved: 100%, Probable: 90%, Possible: 0% 인정
가격	유가: 현행 유가 수준 및 시장 전망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field별 차이율 적용 가스가: EIA 전망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field별 차이율 적용 적용 NGL가격: 기준 유가에 field별 차이율 적용
위험회피	- 유가: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간 WTI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Notional Quantity의 50% 수준에 대해 FWD 매도 (Strike $89/bbl), Call Option 매수 (Strike $180/bbl) - 환율: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간 Forward 방식의 헤지(Hedge)계약 실행(행사가격: KRW 1,111.0/USD) (예상 Notional Quantity의 70% 수준)
세제	- 미국 ・Federal Income tax rate (35%) ・Severance tax(매출세), Ad valorem tax(재산세), State income tax (매출 70%에 1% 세율 적용) ・감모상각: 광업권은 공정가액(매입제안가격)을 기준으로 Proved 매장량에 대한 생산량 비례법으로 상각

	- 대한민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국내 Mutual fund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본 투자회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과세소득금액이 "0"이 됨.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이하"국외원천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동 외국납부 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음. 본 프로젝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14% 금액 환급
잔존가치	평가기간 종료 시 매입지분의 잔존가치 회수액은 "2,115억원" 으로 적용 잔존가치는 2050년 까지의 예상 추정 현금흐름에 대해 유전 평가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2030년 까지는 기술평가 보고서상 수치를 준용하여 할인대상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2030년까지의 평균 현금흐름 감소율을 적용하여 할인대상 현금흐름을 추정함. 동 현금흐름 추정시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39%의 매각을 통한 Exit시에도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 39%를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삼성물산측이 협조하는 SONG Parallel과 본 투자회사간의 "Parallel Petroleum LLC 지분 양수도 관련 협약서" 취지에 따라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Parallel 유전의 광업권을 매각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이에 Parallel Petroleum LLC에서 발생하는 G&A Cost(일반관리비)는 매각가치 산출시 반영되지 않음.
기타	- 운용보수 : 본 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35bp/년 (RG자산운용에 대한 위탁 업무 보수 15bp/년 포함) - 기타 보수 : 본 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10bp/년 - 총액인수 수수료 : 모집금액 대비 350bp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료: 보험기간 10년 - 자문 비용 : 20.7억원 (국내외 법무·재무·기술 등)

나) 추정현금흐름

Parallel Petroleum LLC (100% 기준)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Net Revenue	USDmn	2,226.0	137.9	191.1	234.0	259.1	1,403.9
(-)	USDmn	(506.4)	(42.8)	(47.5)	(51.1)	(53.1)	(311.9)

운영비용 (Opex)							
(-) 자본적 지출 (Capex)	USDmn	(164.4)	(56.5)	(53.0)	(27.0)	(27.8)	(0.1)
Cash Distribution To KIP	USDmn	1,555.2	38.6	90.6	155.9	178.2	1,091.9
KIP 및 본 투자회사 (39% 기준)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Cash Distribution from Parallel Petroleum LLC 주1)	USDmn	606.5	11.2	30.2	54.4	67.3	443.4
(±) Oil Price 헤지	USDmn	4.0	1.8	2.7	0.5	(0.2)	(0.8)
(-) State & Federal Income tax	USDmn	(158.9)	(2.0)	(7.0)	(13.0)	(16.9)	(120.0)
Cash Flow(Fund)	USDmn	451.6	11.0	25.9	41.9	50.2	322.6
예상환율	KRW/ USD		1,075	1,050	1,050	1,050	1,050
Cash Flow(Fund)	억원	4,744.1	118.5	272.5	440.4	527.7	3,385.0
(±) FX hedge	억원	127.7	2.7	11.0	17.9	21.4	74.7
(+) Tax return	억원	645.3	7.3	29.7	59.5	72.2	476.6
(-) 모집금액	억원	(4,000.0)	(4,000.0)				
(-) 인수수수료	억원	(140.0)	(140.0)				
(-) 보험료	억원	(112.1)	(112.1)				
(-) 자문비용	억원	(20.7)	(20.7)				
(-) 운용보수 등	억원	(126.7)	(17.8)	(17.4)	(16.6)	(15.6)	(59.3)
(±) 운전자본	억원	615.2	509.8	105.4			

증감							
(+) 자산 매각금액	억원	2,114.8					2,114.8
합계	억원	3,847.6	(3,652.3)	401.2	501.2	605.7	5,991.8
현금유입기준 IRR : 11.4%							

출처) 삼정 KPMG

(주) Parallel Petroleum LLC 의 분배가능 금액에 39%의 KIP/본 투자회사 지분율 및 정산과정 소요기간(3 개월)을 감안하여 산정됨

다) 현금흐름 세부내역

1) Production Profile

Parallel 유전의 생산량은 매장량 평가기관인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Inc. 의 Production Profile (평가기준일: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투자회사 투자기간인 2013년 1월 ~2022년 12월까지의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기술자문기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Proved, Probable 및 Possible에 대해서 각각 100%, 90%와 0%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원유							
Proved	mbbl	20,063	1,461	1,996	2,383	2,465	11,758
Probable	mbbl	3,913	15	64	140	334	3,360
Oil Subtotal	mbbl	23,976	1,476	2,060	2,523	2,799	15,118
천연가스							
Proved	mmcf	18,376	2,366	2,280	2,317	2,131	9,282
Probable	mmcf	2,811	3	14	54	205	2,535
Gas Subtotal	mmcf	21,187	2,369	2,294	2,371	2,336	11,817
NGL							
Proved	mbbl	1,864	124	189	240	235	1,077
Probable	mbbl	602	0	1	8	41	552
NGL Subtotal	mbbl	2,466	124	189	248	276	1,629
Total Production	mboe	29,973	1,994	2,632	3,166	3,465	18,716

(*) Royalty 차감 후 Net 생산량, 지분율 100% 기준

2) Net Revenue

2013년 1월~2022년 12월까지 발생하는 Net Revenue (Gross Production에서 Government royalty 및 Overriding royalty를 차감하고, 천연가스 생산에 따른 Shrinkage factors을 고려한 Net Production 기준의 수익)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Net Revenue 중 약 93%가 원유 생산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원유							
Proved	USD mn	1,729.4	125.8	172.1	205.6	212.6	1,013.4
Probable	USD mn	339.4	1.3	5.5	12.0	28.9	291.7
Subtotal	USD mn	2,068.8	127.1	177.6	217.6	241.5	1,305.0
천연가스							
Proved	USD mn	52.6	6.0	6.2	6.6	6.3	27.6
Probable	USD mn	9.0	0.0	0.1	0.3	0.7	7.9
Subtotal	USD mn	61.6	6.0	6.3	6.9	7.0	35.5
NGL							
Proved	USD mn	71.4	4.8	7.2	9.3	9.0	41.1
Probable	USD mn	24.3	0.0	0.0	0.3	1.7	22.3
Subtotal	USD mn	95.6	4.8	7.3	9.6	10.7	63.3
Net Revenue	USD mn	2,226.0	137.9	191.1	234.0	259.1	1,403.9

(*) 지분율 100% 기준

3) Price Forecast

본 투자회사의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Parallel 유전의 생산물 실제판매가격 및 WTI의 가격추이를 바탕으로 현행 유가 수준 및 시장 전망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원유 가격

원유 가격는 추정기간 동안 $89.5/bbl의 기준가격을 일정하게 적용하였으며, CG&A 매장량 평가보고서 상 각 Field 별 기준가격 대비 실현가격 차이비율을 반영하여 Field별 적용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원유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투자개시 이후 7년간 2P(Proved 및 Probale) 생산량을 100% 인정했을 경우의 예상 생산량의 50%를 $89/bbl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선도계약 체결을 가정 하였으며, 헤지(Hedge) 행사가격 및 계약 물량 비중은 실제 계약 체결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별 적용 기준유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원유 기준가격	USD/bbl	89.5	89.5	89.5	89.5	89.5

-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2013년까지 EIA 예측가격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 이후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CG&A 매장량 평가보고서 상 각 Field 별 기준가격 대비 실현가격 차이비율을 반영하여 Field별 적용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 물량의 비중이 낮아 별도의 헤지(Hedge)계약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간별 적용 기준 가스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천연가스 기준가격	USD/mcf	3.50	3.50	3.50	3.50	3.50

- NGL 가격

NGL 가격은 CG&A 매장량 평가보고서 상 기준 원유가격 대비 각 Field 별 NGL실현가격 차이비율을 적용 원유가격인 $89.5/bbl에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Parallel Petroleum LLC 보유 유전의 원유, 천연가스 및 NGL은 Conoco Phillips, Sunoco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매출되며, 이때 각 유전의 위치, 지역 수급상황, 운송 인프라 접근성, 생산물 특성, 판매처와의 협상결과 등에 따라 기준가격에 대비 일정수준 조정이 이루어진 가격으로 판매되게 됩니다.

2011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결정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유

지역		판매선	가격조건	수송조건
Diamond M	Deep	Sunoco	Sunoco WTI / NMI + Argus P-Plus ± Argus Mid/Cushing - $ 1.00	Truck
	Shallow		Sunoco WTI / NMI + Argus P-Plus - Argus WTI / WTS - $ 1.00	Truck
Harris	Enterprise	Enterprise	Conoco WTI + Argus P-plus ± Argus WTI/WTS - $0.4 - $ 0.26 - $0.2	Pipeline
	HSAU	ConocoPhillips	Conoco WTI + Platt's P-plus ± Platt's WTI/WTS - $ 1.9(or $1.21)	Truck
Carm Ann		ConocoPhillips	Conoco WTI + Platt's P-plus ± Platt's WTI/WTS - $ 1.9(or $1.21)	Truck
Permian Basin	WWS	Plains Marketing	Plains WTI + Argus P-Plus ± Argus Mid/Cushing - $3.75	Truck
	North Penwell	ConocoPhillips	Conoco WTI + Platt's P-Plus ± Platt's Mid/Cushing - $1.85	Truck

출처) Field 별 판매자료

② 천연가스

지역	판매선	가격조건
Carm Ann	DCP	65% ~ 72% X index 가격 평균 (Inside FERC's Gas Market Report 중 Northern Natural Gas co. (TX, OK, KS)와 El Paso Natural Gas Co. (Permian Basin)의 midpoint 가격평균
		65% ~ 72% X Opis Mt.B(Mont Belvieu)(TET) - $0.055 / gal
Harris	DCP	65% ~ 71% X index 가격 평균 (Inside FERC's Gas Market Report 중 Northern Natural Gas co. (TX, OK, KS)와 El Paso Natural Gas Co. (Permian Basin)의 midpoint 가격평균
		65% ~ 72% X Opis Mt.B(TET) - $0.055 / gal
Diamond M	West Texas Gas	75% ~ 83% X Inside FERC El Paso PB - $0.05
		75% ~ 83% X Opis Mt.B((TET) - $0.055 / gal

Permian Basin	WWS	DCP	84% ~ 87% X GD El Paso PB
			84% ~ 87% X Opis Mt.B((TET) - $0.055 / gal
Barnett		Chesapeake	Index gas - $1.32 (fixed fee)

출처) Field 별 판매자료

4) 운영 비용 및 자본적 지출

추정기간 동안의 연도 별 운영비용은 G&A cost(일반관리비), Direct Lease Cost, Ad Valorem Tax 및 Serverance Tax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A cost는 실적 발생금액을 감안하여 연간 USD 13.7 mil. 수준의 지출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운영비용은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Inc. 의 Reserves Report 상 제시된 금액이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연도별 자본적 지출은 Cawley, Gillespie & Associates, Inc.의 Reserves Report 상 제시된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그 중 80%는 당기에 전액 상각되고 나머지 20%는 자본화 후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본 투자회사에 귀속된 운영비용 및 자본적 지출 추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운영 비용							
G&A cost	USD mn	137.0	13.7	13.7	13.7	13.7	82.2
Direct Lease Cost	USD mn	247.0	21.7	23.9	25.3	26.0	150.1
Ad Valorem Tax 및 Serverance Tax	USD mn	122.4	7.4	9.9	12.1	13.4	79.6
운영비용 합계		506.4	42.8	47.5	51.1	53.1	311.9
자본적 지출							
비용화 부분	USD mn	131.5	45.2	42.4	21.6	22.2	0.1
자본화 부분:	USD mn	32.9	11.3	10.6	5.4	5.6	0.0
자본적지출 합계	USD mn	164.4	56.5	53.0	27.0	27.8	0.1

(*) 지분율 100% 기준

5) 과세

지분율 39%를 고려한 KIP 매출액의 70%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 과세당국에 State Income Tax을 납부하고, KIP의 상각금액을 고려 후 Taxable Income 금액을 기준으로 35%의 Federal Income Tax를 미국 과세당국에 납부합니다.

① US State & Federal Income Tax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Net Revenue	USD mn	868.1	40.3	69.3	87.0	98.6	572.9
(±) Oil Price 헤지	USD mn	4.0	1.8	2.7	0.5	(0.2)	(0.8)
Base: Revenue*70%	USDmn	610.4	29.4	50.4	61.2	68.8	400.6
State Income Tax rate	%		1.00%	1.00%	1.00%	1.00%	1.00%
State Income Tax	USDmn	5.9	0.2	0.5	0.6	0.6	4.0
(-) Opex	USD mn	(197.4)	(12.5)	(18.0)	(19.5)	(20.5)	(126.9)
(-) Depletion	USD mn	(231.9)	(24.3)	(35.0)	(32.0)	(30.8)	(109.8)
Taxable Income	USD mn	436.9	5.1	18.5	35.4	46.5	331.4
Federal Income Tax rate	%		35.0%	35.0%	35.0%	35.0%	35.0%
US Federal income tax	USD mn	153.0	1.8	6.5	12.4	16.3	116.0
State & Federal Income tax	USDmn	158.9	2.0	7.0	13.0	16.9	120.0

(주) State Income Tax 및 Federal Income Tax 납부금액은 지분율(39%)과 정산 소요기간(2 개월)을 감안하여 산정됨

대한민국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아 미국 현지에서 납부한 조세금액은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추정기간동안 본 투자회사 귀속 납부 및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세액 환급(대한민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환급대상액 [min(①,②)]	USD mn	61.4	0.7	2.8	5.7	6.9	45.4
① US Tax 납부세액	USD mn	158.9	2.0	7.0	13.0	16.9	120.0
② 외국과세 소득금액 x14%	USD mn	61.4	0.7	2.8	5.7	6.9	45.4
예상환율 주1)	KRW/ USD		1,075.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환급세액	KRW	645.3	7.3	29.7	59.5	72.2	476.6

한편 관련 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관련규정	적용내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국내 Mutual fund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따라서 100% 배당하는 경우 소득 0) - 배당가능이익 = 기업회계기준 상 법인세비용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상법상 이익준비금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동 외국납부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음.

8) 원유 가격 헤지(Hedge)

운용사는 SWAP BANK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원유 가격 헤지(Hedge)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헤지(Hedge) 조건
헤지(Hedge) 방식	기존 : Oil Swap/Collar, Gas Swap/Collar 신규 : 원유 Forward Sell + Deep OTM Call Option Buy 가스는 신규 헤지계약 체결하지 않음
헤지(Hedge) 기간	기존 : Oil Swap/Collar (2012~2014) Gas Swap(2012~2013), Gas Collar(2012~2014) 신규 :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헤지(Hedge) 물량	기존 : 기존 헤지체결 물량 중 지분인수 비율 39%만큼 인수 신규 : 헤지(Hedge) 기간 내 예상 생산량의 50% 수준 (2P 매장량 100%인정, 기존 헤지물량 고려 후 기준) 동일 수량에 대해 FWD Sell 및 Call Option 매입 예정
헤지(Hedge) 가격	FWD : USD 89/bbl (가정) Call Option : USD 180/bbl

주)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한편,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Oil Production	mbbl	9,351	576	804	984	1,092	5,896
헤지(Hedge) 물량(Q)							
Hedged(기존)	mbbl	368	192	176	-	-	-
Hedged(신규)	mbbl	2,908	95	227	495	553	1,539
Naked	mbbl	6,075	384	401	489	539	4,357
헤지(Hedge) 가격(P)							
Price(기존 Hedge)	USD/bbl	-	88.1~100.6	99.3	99.3	-	-
Price (신규 Hedge)	USD/bbl	-	89.0	89.0	89.0	89.0	89.0
Price (Naked)	USD/bbl	-	89.5	89.5	89.5	89.5	89.5
Hedge손익	USDmn	4.0	2.5	2.8	(0.2)	(0.2)	(0.9)

Hedge손익(기간조정)	USDmn	4.0	1.8	2.7	0.5	(0.2)	(0.8)

(주) 지분율 39%가 반영된 KIP 해당 생산량 기준임

9) F/X(Foreign Exchange) 헤지(Hedge)

운용사는 SWAP BANK와의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F/X 헤지(Hedge)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헤지(Hedge) 조건
헤지(Hedge) 상품	Forward(Zero Cost) Sell
헤지(Hedge) 기간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헤지(Hedge) 대상	예상 외화 유입액의 70% 수준
적용 조건	KRW 1,111.0/USD (가정)

주)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F/X 헤지(Hedge)를 할 경우 헤지(Hedge)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1Q 2023
KIP 현금유입	USD mn	303.3	11.0	25.9	41.9	50.2	174.3
대상현금흐름	USD mn	212.2	7.7	18.1	29.3	35.1	122.0
예상현물환율	KRW/USD	-	1,075.0	1,050.0	1,050.0	1,050.0	1,050.0
Hedge 환율	KRW/USD	-	1,111.0	1,111.0	1,111.0	1,111.0	1,111.0
환율 차이	KRW/USD	-	36.0	61.0	61.0	61.0	61.0
헤지(손)익	억원	127.7	2.7	11.0	17.9	21.4	74.7

라) 민감도분석

매장량 중 Probable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변동 하의 원금회수기간(Payback Period) 및 내부수익률(IRR)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헤지(Hedge)기간의 유가 : USD 89.5/bbl 기준)

구분	Probable 인정 비율					
	50%	60%	70%	80%	90%	100%
원금회수기간 (Payback Period)	7.4년	7.3년	7.2년	7.1년	**7.0년**	6.9년
내부수익률 (IRR)	10.0%	10.4%	10.7%	11.1%	**11.4%**	11.8%